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1994. 12

통 일 원

차 례

- 외국인투자법 3
- 합병법 9
- 합병법시행세칙 20
- 합작법 46
- 외국인기업법 51
-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59
- 토지임대법 84
- 토지임대법시행규정 97
-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131
-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151
- 외화관리법 186
- 외화관리법시행규정 193
- 세관법 212
- 외국투자은행법 226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235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
규정 247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체류및
거주규정 253
-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259
- 자유무역항규정 268
-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277
- 부 록 : 각종 관련 서식

외국인투자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인투자자란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

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리운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는 공화국 령역 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 5 조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 령역 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제 6 조 외국투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제 8 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 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

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자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 외국투자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4조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 안에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는 리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합 영 법

1994. 1. 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합영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 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 영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서의 합영기업 창설은 이 법에 준하지 않는다.

제 3 조 합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

을 장려한다.

제 4 조 합병당사자는 합병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생기는 빚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진다.

제 5 조 합병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한다.

제 6 조 합병기업은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국가는 합병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7 조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병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병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같은 우대를 한다.

제 8 조 합병기업은 경영활동을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 2 장 합병기업의 창설

제 9 조 합병을 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

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합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합영기업 창설일이 된다.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제1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이용권 같은 것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것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

시장가격에 준하여 합병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 합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몹을 상속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제13조 합병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를 내올 수 있다.

제14조 합병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출자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합병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70%이상 되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늘이려는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제 3장 합병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 합병기업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합병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17조 이사회는 합병기업의 기본규약을 수

정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제18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영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영기업은 기본 규약, 이사회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

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한 날이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23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 영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 안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 판매계획을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 물자에 대하여는 반출입 승인만을 받는다.

제25조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나라 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노동법과 외국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에 따라 노력을 관리하며 이용하여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9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0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3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을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 4 장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간 결산은 다음 해 2월 안으로 한다.

제34조 합영기업의 결산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덜고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이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 수 있다.

제36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37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이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이윤을 분배해야 한다. 이윤분배는 결산이

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제39조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이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연속하여 4년을 넘길 수 없다.

제40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 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4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

고 분배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5 장 합병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 해산된다.

제44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청산인들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병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 안에 기업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45조 합병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의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의 계산은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46조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합영법시행세칙

1992. 10. 16 정무원 결정 제148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세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우리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소, 협동단체는 일정한 재산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체, 개인 및 경제조직들과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할 수 있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합영은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 건설, 운수, 관광업을 비롯 인민경제의 여러분야에서 할 수 있다.

제 4 조 합영회사는 현대적 설비와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원료, 자재, 동력을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 세계적 수준의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늘리며 최단기간 안에 투자의 효과성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 부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영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 6 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과 합영법시행세칙,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계약, 회사규약, 리사회 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조직된 합영회사는 회사재산의 소유권과 기업경영권을 가지는 공화국의 법인으로 된다.

제 8 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대상에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경영활동 결과에서 얻은 순소득을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기

업형태이다. 합영회사는 경영활동과정에서 생기는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자기의 출자몫 안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제 9 조 합영회사는 모든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 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국가에서 승인한 업종 밖의 다른 업무활동(무역거래 포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가 출자한 재산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11 조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세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소, 협동단체와 합영할 수 있다.

제 2 장 합영회사의 조직과 등록

제 12 조 합영회사를 조직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계약을 맺기 전에 자기기관의 성격과 임무, 직능에 맞는 적합한 업종을 선정한다. 다음 필요한 문건을 해당기관(예비기술과

제는 국가계획위원회, 발명권, 기술문헌 등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자와 이윤, 경제타산서를 비롯한 재정관계문헌은 재정부, 건물의 시행설계는 국가건설위원회, 경제타산자료, 계약서의 합영회사규약 조인은 합영공업총국)에 제기하여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기관은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합의 여부 또는 의견을 당사자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는 합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2. 합영당사자의 이름과 법적 주소
3. 합영회사의 존속기간, 등록자금, 출자총액, 출자비율,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4. 리사회의 구성과 합영회사의 관리기구
5.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 방법
6. 합영당사자들의 임무
7. 재정관리, 로력관리, 자재보장 질서 및

방법

8.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9. 결산과 리윤분배 방법
10. 합영회사의 해산 및 청산조건
11. 법칙적용과 분쟁해결방법
12. 계약효력 발생조건

제14조 합영회사는 규약을 가져야 한다. 회사규약에는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합영당사자들의 이름과 법적 주소, 합영회사 등록자금과 출자총액, 출자비율, 출자금의 양도조건, 결산과 리윤분배 방법, 리사회 구성, 리사회 성원들의 임무, 리사회 규칙, 회사관리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절차, 재정외화관리 절차와 방법, 합영회사의 해산과 청산 절차, 합영회사 규약의 수정보충 절차 등 합영회사의 사업내용과 활동원칙 및 질서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제15조 합영회사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영계약을 맺는 차제로 합영공업총국(이 아래부터 합영주관기관이라 한다)에 합영회사 조직승인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조선문과 외국문으로 된 계약서와 경제타

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6조 합병주관기관은 합병회사조직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한달 안으로 심의하고 국가승인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7조 합병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합병계약과 합병회사 규약은 합병회사조직이 승인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합병당사자들이 합병계약서와 회사규약 내용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합병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병당사자들은 합병회사조직이 비준된 날로부터 60일 안으로 자기 출자몫의 5%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19조 우리측 당사자기관은 합병회사조직이 비준되면 합병회사조직 승인통지문건을 첨부한 합병회사 등록신청서를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회사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제20조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회사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합병회사는 등록된 날부터 법인으로 된다.

제21조 합영회사의 당사자들은 회사조직을 비준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으로 다음과 같이 출자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1. 출자총액이 300만달러까지는 70%
2. 출자총액이 301만달러~1,000만달러까지는 60%
3. 출자총액이 1,001만달러~2,000만달러까지는 50%
4. 출자총액이 2,000만달러이상은 40%

제22조 합영회사는 이 세칙 제21조에 규정된 대로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은행기관의 증빙문건과 생산시설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해당기관의 확인문건이 첨부된 영업허가신청서를 합영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제23조 합영주관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합영회사에 영업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4조 합영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는 조건에서 경영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25조 합영회사가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때에는 리사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합영주관기관에 변

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합병주관기관은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정무원의 비준을 받아 해당 합병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합병회사는 7일 안으로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 회사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변경된 내용대로 고쳐야 한다.

제 3 장 출 자

제26조 합병당사자들의 출자비율은 양측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7조 합병당사자들은 화폐,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토지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출자몫으로 넣지 않았을 때는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8조 합병당사자들은 출자하는 화폐를 호상 합의하여 정한다.

제29조 우리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조선원을 외국화폐로 환산하거나 상대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화폐를 조선원으로 환산할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이 공

포하는 환율에 따라 한다.

제30조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으로 출자할 때 그 값은 국가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영주관기관이 평가한데 따라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31조 상대측 당사자가 출자하는 설비, 기술문헌, 발명권, 기술비결, 물자들은 합영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장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32조 합영회사는 당사자들이 출자한 건물,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을 합영주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 합영회사의 기본건설은 국가건설위원회와 합의한 시공설계에 기초하여 우리측 당사자기관이 국가계획에 맞물려 진행한다.

제34조 상대측 당사자가 기술특허로 출자할 때에는 특허등록문헌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허권으로 출자할 때에는 특허권 이전등록이 끝났을 때에 출자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35조 합영당사자들은 계약서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몫을 전부 출자하여야 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로부터 초래된 손해를 다른 당사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36조 합영회사는 합영당사자들이 자기출자몫을 다 출자하면 리사회에서 그것을 확정하고 합영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출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다.

제37조 합영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을 줄일 수 없다.

제38조 합영회사는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합영회사 상대방 당사자는 출자몫을 양도받는데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 4 장 리사회와 관리성원

제39조 합영회사는 최고결의기관으로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3명 이상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합영당사자들이 선출하는 리사

수와 리사장, 부리사장은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계약과 회사규약에서 정한다.

제40조 리사회성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필요한 경우 합영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리사회성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성원들의 임기는 선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1조 리사회는 해마다 한번 이상 리사장이 소집하며 리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부리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리사회 성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리사회에 참가하지 못할 때에는 그가 위임한 다른 사람이 결의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 날자와 장소, 토의 안건은 미리 리사회 성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합영회사는 리사회의 소집과 관련한 비용을 재정예산에 예견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 리사회에서는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합영회사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관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재정검열원의 임명,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합영회사 존속기간의 연장, 회사기업의 증지 및 해산 등 합영회사 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44조 리사회에서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회사기업의 증지 및 해산, 리사장, 부리사장, 리사, 합영회사사장, 부사장, 재정검열원, 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 결산과 분배문제 등은 리사회에 참가한 리사성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그 밖의 문제들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리사회에서 토의하는 문제들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투표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 합영회사에는 사장, 부사장을 비롯한 필요한 수의 관리성원을 둔다.

제46조 합영회사의 사장은 계약과 회사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리사업 전반을 조직지도하며 자기사업에 대해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47조 합영회사의 리사장과 사장은 각각 다른 당사자측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리사회 성원들은 필요한 경우 합영회사의 관리성원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사장은 리사회의 결정을 집행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당사자 또는 그가 위임한 일꾼들과 반드시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제48조 합영회사는 생산과 경영 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반제품, 설비, 경영용 물자(이 아래부터는 물자라 한다)를 우리나라에서 사쓰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쓴다.

제49조 합영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사쓰는 물자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보장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물자,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사쓰는 것이 불리하거나 불가능한 물자는 우리나라의 무역기관들과

다른 합영, 합작 회사 및 그 밖에 국가적으로 승인된 자재공급기관 또는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사설 수 있다.

제50조 합영회사가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물자를 사쓰려고 할 때에는 그 소요량을 전해 3·4분기까지 합영상사에 제기하여 국가계획(합영수출계획)에 맞물린 다음 합영자재상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때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합영수출계획에 예견된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 합영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사설 수 없는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직접 사쓰거나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무역회사에 위탁하여 수입할 수 있다.

제52조 합영회사는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등 앞선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다.

제53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 합영회사는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직접하거나 우리나라의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때에 수출허가는 받지 않고 반출승인만 받는다.

제55조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판매하려 할 때에는 무역기관, 다른 합영, 합작 회사를 대상으로 실현해야 하며 국가승인을 받아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 기업소에도 넘겨줄 수 있다.

제56조 합영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밑에 합영자 재상사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 이때 판매가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외화가격에 기초하여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57조 합영회사는 이 세칙 제56조에 의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받은 상품대금을 국가의 승인밑에 우리나라에서 사쓰는 물자값과 종업원들의 로임, 각종 사용료, 국가납부금을 지출하는데 쓸 수 있다.

제58조 합영회사가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하거나 다른기관에 넘기려고 할 때는 합영주관기관의 승인(대당값이 5만달러 이상되는 설비와 운전기재는 국가승인)을 받은 다음 합영자재상사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 합영회사가 상대측 당사자의 투자 몫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회사경영용으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수입허가는 받지 않고 반입승인만 받으며 관세를 물지 않는다.

제60조 합영회사가 국가승인을 받지 않고 생산 및 경영과 관련없는 물자를 수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였을 때는 해당기관이 그 물자를 억류 또는 몰수하거나 관세나 벌금을 물리는 등 해당한 제재를 준다.

제61조 합영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는 합영회사가 자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품질감독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합영회사가 국가품질감독기관에 위탁하여 제품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62조 합영회사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물, 전기, 난방, 통신수단들의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63조 합영회사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에 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 6 장 로 력 관 리

제64조 합영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로력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로동행정기관을 통하여 한다. 로동행정기관은 합영회사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5조 합영회사 사장은 회사의 로력을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로력 관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상대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미리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 합영회사는 국가의 승인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종업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67조 해당기관들은 합영사업과 관련없는

일에 합영회사의 종업원들을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68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의 노동시간, 휴식, 노동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법규에 따라 보장받는다.

제69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필요한 기능공들을 양성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70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규범과 규정에 따르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제71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노동보수의 7%, 종업원들은 받는 노동보수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바쳐야 한다.

제72조 해당 기관들은 회사활동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합영회사 성원들의 재외출장수속을 제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73조 합영회사는 회사 안에 조직된 사회단체들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7 장 재 정 관 리

제74조 합영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또는 국가가 정한 다른 대외결제 은행에 외화 돈자리와 조선원 돈자리를 둔다.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나라 은행에 외화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합영회사의 모든 외화수입과 수출은 은행에 있는 돈자리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75조 합영회사는 은행의 예금돈자리에 있는 외화잔고에 대하여 리자를 받는다.

제76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서 모자라는 외화를 우리나라 은행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금은 합영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7조 합영회사는 우리나라 안에서 무역기관과 다른 합영, 합작 회사를 통하여 사고 파는 상품대금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는 한 외화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78조 합영회사의 경영계산은 조선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외화로도 할 수 있다.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선원의 환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화폐환산비율에 따라 한다.

제79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리익배당금을 비롯하여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문건을 은행에 내야 한다.

제80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나라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로임액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다른 나라에 송금할 수 있다.

제81조 합영회사에 대한 재정검열은 리사회가 임명한 재정검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합영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성원들도 재정검열을 할 수 있다.

제 8 장 결산과 분배

제82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정형을 해마다 결산하여야 한다. 합영회사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합영을 시작한 첫해는 회사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합영기간이 끝나는
마지막해는 1월 1일부터 해산되는 날까지
를 결산기간으로 한다.

제83조 합영회사의 결산은 연간 총 수입금
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순소득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4조 합영회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서
를 재정검열원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1월
안으로 합영주관기관과 재정부에 내야 한
다.

제85조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회사 소
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제86조 합영회사의 이익금분배는 해마다 회
사가 얻은 순소득에서 소득세와 납부금,
각종 기금을 공제한 다음 남은 나머지를
합영당사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분배는 리사회에서 결산문
건을 비준한 다음에 할 수 있다.

제87조 합영회사는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영회사 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얻은 순소득 가운데서

5%씩 적립한다. 예비기금은 리사회결정에 따라 합영회사의 결손금을 보충하는데 쓸 수 있다.

제88조 합영회사는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등을 가진다. 이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며 기금의 조성비율은 합영회사 순소득의 3%미만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 합영회사는 전년도 손실을 메꾸기 전에 순소득을 분배하지 말아야 하며 전년도에 분배하지 못한 순소득은 당해년도 순소득에 포함시켜 분배하여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분배받은 돈을 재투자할 수 있다.

제 9 장 합영회사의 존속기간과 해산

제90조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합영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다. 우리나라 영역 안에 조직하는 합영회사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까지로 하며 국가가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상 등은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합병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 회사를 등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91조 합병회사는 계약에 규정된 존속기간 이 끝나면 해산된다. 합병회사가 존속기간 을 연장하려고 할 때는 기간만기 6개월 전 에 리사회에서 결정한 다음 합병회사 존속 기간 연장신청서를 합병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합병주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20일 안으로 합병회사에 회답을 주어야 한다. 합병회사는 존속기간연장이 승인 되면 10일 안으로 회사등록기관에 제기하여 기간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2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이라도 리사회에서 결정하고 합병 회사를 해산할 수 있다.

1. 합병회사가 5년이상 연속 결손을 냈을 때
2. 합병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영활동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합병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93조 합병주관기관은 합병회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과 규정을 란폭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기업을 중지시키거나 국가의 승인을 받아 해산시킬 수 있다.

제94조 합병회사가 해산될 때 리사회는 청산위원회를 조직하고 청산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사장은 자기사업을 청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5조 청산인은 리사회성원들 가운데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우리 재정기관에서 일하는 성원들을 선발할 수 있다. 합병주관기관은 청산위원회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청산위원회의 성원들의 청산사업에 동원되는 기간 그들의 로동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합병회사자금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제96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리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병회사는 리사회에서 청산문건을 비준한 날부터 7일 안으로 회사해산

에 대한 문건을 합병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합병주관기관은 해당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합병당사자들과 재정부를 비롯한 해당기관들에 합병회사의 해산을 증명하는 문건들을 보내야 한다.

제97조 합병회사는 해산이 선포된 날부터 5일 안으로 회사등록기관에 제기하여 등록 문건에서 제적하여야 하며 합병당사자 기관은 합병회사가 해산된 날부터 3년 동안 합병회사의 등록과 청산문건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10장 분쟁 해결

제98조 합병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병 당사자들 사이에 생기는 의견상이와 분쟁 문제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한다.

제99조 합병당사자들은 제기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심의해결받으려 할 때에는 소송 문건을 해당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내

야 한다.

제100조 재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한다. 합영당사자들은 민사소송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101조 중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재사건 심의절차에 따라 한다. 중재 원고와 피고는 중재원 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102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쟁 문제의 심의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103조 합영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간 동안 분쟁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들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04조 상대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합영 회사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해줄 데 대한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합 작 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 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 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 부문에도 조직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5 조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

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을 할 수 있다.

제 6 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투자자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으로 그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 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안에 해당기업 소재지의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 창설일로 된다.

제 9 조 합작기업은 승인된 합작업종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가 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

제12조 합작기업은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

제15조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 기타 소득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6조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 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회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운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9조 합작 당사자들 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제20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 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외국인기업법

199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2 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자가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외국투자자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을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6 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 7 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 타산서, 투자가의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비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에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

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국투자자는 기업창설이 승인되면 3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기업 창설일로 된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1조 외국투자자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자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 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투자가가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범위 안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17조 외국인기업이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도 있다.

제1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 안에 재정부기문건을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 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과 관련한 로력을 기업 소재지의 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로력을 해고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다른 나라 기술자, 기능공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노동조건 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리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리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5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등록자본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 정형을 검열 감독할 수 있다.

제 4 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8조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30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 경제위원회에 해산 또는 파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제31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

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994. 3. 29 정무원 결정 제13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가(이 아래부터는 '투자가'
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
는 '지대'라 한다)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
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기업은 투
자가가 자본을 단독으로 투자하여 창설하
며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
도 지대 안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인으로 되
며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
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 4 조 외국인기업의 창설 및 운영은 이 규

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외국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6 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문건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에 내는 문건을 조선어로 써야 하며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 2 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 7 조 투자가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1.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동력공업 부문
2.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 부문
3.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 부문
4. 건설, 운수 및 봉사 부문
5. 이밖의 필요한 부문

제 8 조 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 가운데에

서 어느 한가지라도 만족시키는 경우에라야 창설할 수 있다.

1.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과 최신설비로 장비되어야 한다.
2.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제 9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

1. 공화국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 인민들의 건강보호와 국토 및 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설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경우
4. 생산제품이 국내외에서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5. 업종과 경영방법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감정과 생활기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제10조 다음과 같은 부문에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없다.

1. 출판, 보도, 방송 부문
2. 체신부문
3. 이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금지한 부문

제1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위한 수속을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를 도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직무, 외국인기업 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업종, 생산품종 및 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거래은행, 투자 방식과 기간, 주요생산 기술공정자료, 생산제품의 실현대상시장과 실현 방식, 기업의 기구, 종업원수 및 노력채용과 관련한 자료, 건설부지면적과 희망하는 위치, 용수, 동력 및 원자재 소요량, 연도별 생산계획, 경영기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투자

가에 대한 증명문건,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 명세,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과 그에 대한 설명서, 투자가의 자본 신용확인서, 이밖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업의 창설목적, 경영범위, 생산규모,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방식과 기간, 기업의 기구 및 그 직능, 이사장·사장·부기장·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경영기간, 해산 및 청산, 기본규약의 수정절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 외국인기업의 기본규약은 기업창설을 심사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외국인기업의 경제타산서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계획, 생산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 설비의 기술 및 유익성 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 주요 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중

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 양성계획, 단계별 수익성 타산자료, 이밖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6조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에는 기계설비 및 자재의 이름, 규격, 단위, 수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공장 및 회사명, 수입해 오는 나라 이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기계설비와 관련한 상품알림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설명서에는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 같은 것을 밝히고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체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공업소유권증서 사본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 창설을 위한 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는 대외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대외경제기관'이라 한다)와 지대당국이 포함된다.

대외경제기관은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총투자액 2천만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하부구조건설대상 밖의 대상 가운데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사승인한다. 투자규모가 적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할 수 있다.

제19조 지대당국은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하는 대상의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제20조 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 또는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2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기업을 등록하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주소, 외국인기업 책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예견날자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은 지대 또는 다른 나라에 자기의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을 두거나 새끼회사를 내올 수 있으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 것을 내오거나 기업을 연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건설을 공화국의 해당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 3 장 투자절차와 방법

제25조 외국인기업은 총투자액과 규모에 따라 정한 등록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의 총액이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 가운데서 지대당국에 등록한 자본의 총액이다.

제26조 등록자본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1. 총투자액 6백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 이상
2. 총투자액 6백만원 이상부터 2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45%(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9백만원까지는 410만원) 이상
3.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부터 6천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35%(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2천 7백만원까지는 950만원) 이상
4. 총투자액 6천만원 이상은 총투자액의

30%(그 가운데에서 총투자액이 7천 7백 만원까지는 2천 6백만원) 이상

제27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데 따라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28조 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의 가격은 투자가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투자하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투자가의 소유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2. 경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평가액이 등

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외국인기업은 투자몫으로 들어오는 기계설비를 대외상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외상품검사기관은 검사의뢰서에 따라 기계설비를 검사하고 검사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대외상품검사기관이 기계설비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31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다음의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1.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2. 투자를 여러번에 나누어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하여야 한다. 첫번째 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등록자본의 15% 이상 되게 하여야 하며 첫번째 투자가 끝난 다음번의 투자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안으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기간 안으로 한꺼번에 투자하지 않거나 첫번째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와 다음번의 투자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투자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외국인기업은 지대재정기관의 세무등록취소확인서와 기업등록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기업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투자가는 등록자본의 투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없는 경우 심사승인기관에 제기하여 투자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부구조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전액을, 그밖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재투자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재투자한 자

본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았던 소득 세액을 다시 바쳐야 한다.

제34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투자할 때마다 투자검증보고서를 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투자검증보고서는 부기검증사무소가 발급한다.

제 4 장 생 산 및 유통

제35조 외국인기업은 영업허가증을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은 기업등록신청서에 밝힌 조업예견날자 안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지대당국이 발급한다.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에 영업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해당 내용을 밝히고 투자를 확인한 부기검증사무소의 투자검증보고서,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전성과 환경보호를 담보하는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 생산한 시제품의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대당국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주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36조 경영활동은 승인받은 기본규약범위
에서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자체로 만들어 지대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
자를 공화국 영역 안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할 수도 있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에서 생산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
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
하여 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에서 생산한 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상업망
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사무용품과 경영용비
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을 받
아야 한다.

제38조 외국인기업이 투자몹으로 들어오는
물자와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쓰기 위하여
들어오는 물자, 자체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제39조 외국인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을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40조 외국인기업의 수출입 상품가격(기술 봉사요금 포함)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 지대 안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대 밖의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과 지대 안에 판매하는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격 제정기관이 정한다. 외국인기업은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입상품의 가격을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실현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 외국인기업은 수입한 물자의 보관 및 이용, 생산한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사항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부기

제42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계산규

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3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계산을 조선원으로 하여야 한다.

재정부기계산을 외화로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시기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율로 계산된 조선원을 곱쓰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조선원 돈자리와 외화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외화 거래와 결제는 거래 은행에 있는 자기 돈자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었을 경우에는 분기마다 수불정형과 거래은행의 제시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45조 외국인기업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이다. 외국인기업을 창설한 해의 결산연도는 기업창설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외국인기업을 종결하는 해의 결산연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종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46조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

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47조 외국인기업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과 종업원들을 위한 상급기금 및 문화후생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놓아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씩 적립한다. 적립된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데만 쓸 수 있다. 예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는 외국인기업이 자체로 정한다.

제48조 외국인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을 하여야 한다. 분기 재정부기결산문건은 분기 다음달 15일 안으로, 연간 재정부기결산문건은 결산연도가 끝난 다음날부터 2개월 안으로 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문건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이윤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계산표 같은 것이 포함된다. 연간 재정부

기 결산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4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 운영과정에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소득 및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50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은행 또는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제51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 문건을 5년 (재정부기결산서, 고정재산문건은 기업의 경영기간이 끝날 때까지)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 외국인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화국의 재정부기 일군, 또는 다른 나라 재정부기 일군의 도움을 받아 재정부기 문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된 비용은 투자가가 부담한다.

제 6 장 노력관리

제53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

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4조 외국인기업이 공화국의 노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재지의 노력알선기관과 노력채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5조 채용한 공화국의 노력을 계약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계약조건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6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 노임기준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노동규정에 따른다.

제58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은 직업동맹조직 안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59조 직업동맹조직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경제과업을 잘 수행하도록 종업원들을 교양한다.

2.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과 과학지식 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3. 외국인기업과 노동조직, 노동보수, 노동보호와 관련한 단체계약을 맺고 그 집행을 감독한다.
4. 외국인기업과 종업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조정한다.
5. 종업원들의 권리, 이익과 관련한 문제 토의에 참가하여 돈을 주거나 권고안을 제기한다.

제60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직업동맹 대표와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사업 조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62조 외국인기업은 월마다 직업동맹조직에 다음과 같은 활동자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1. 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2%에 해당하는 자금
2. 종업원 500명 이상부터 1,0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1.5%에 해당하는
자금

3. 종업원 1,000명 이상은 전체 종업원 월
노임의 1%에 해당하는 자금

제 7 장 경영기간과 해산

제63조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등록
증이 발급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64조 경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심사승인기
관에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은 경영기간연장신청서를 받
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승인해 주거나 부
결하여야 한다.

제65조 외국인기업은 경영기간을 연장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경영기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외국인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

1. 경영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
2.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
가 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4. 외국인기업창설증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었
을 경우

제67조 외국인기업을 해산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해산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
다. 지대당국은 접수한 기업해산신청서를
검토하고 자기가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
여서는 직접 해산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
여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날이
기업해산일로 된다.

제68조 외국인기업은 해산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해산을 공개하고 채권 채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외국인기업은 기업해산을 공개한 날
부터 15일 안으로 청산위원회 위원명단을

심사승인기관에 내어 합의를 받아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의받은 날부터 1주일 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0조 청산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기업의 책임자
2. 채권자의 대표
3. 심사승인기관의 대표
4. 부기검증원
5. 변호사

제71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 회의를 소집한다.
2. 기업의 재산을 넘겨받아 관할한다.
3. 채권 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4.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5. 청산안을 작성한다.
6. 세금을 바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한다.
7.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72조 청산과 관련한 비용은 해산되는 외국인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73조 외국인기업은 청산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투자한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례로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심사승인기관에 낸 다음 지대당국에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바치고 기업 및 세무취소등록 수속을 하며 해당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 8 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75조 심사승인기관은 외국인기업의 장부와 현물을 검열할 수 있다.

제76조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시키거나 정도에 따라 외국인기업에는 1만원까지, 외국인에게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1. 등록질서를 어기었을 경우

2.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3. 투자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4. 수출입 업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77조 탈세행위를 하였거나 세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르는 연체료와 벌금을 물린다.

제78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 수 있다.

제79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거래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제80조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임대법

1993. 10.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

제 1 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공화국의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 3 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 4 조 토지임대는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는 지대당국이 한다.

제 5 조 합영, 합작 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있다.

제 6 조 토지임대기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 정한 50년 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임대 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한다.

제 8 조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이용한다.

제 2 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 9 조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10 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 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

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11조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건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이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받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12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 및 개찰 날자,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 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 조건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급한다.
8. 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임대료를 지

불한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해 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9. 낙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안에 해당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10. 낙찰자가 정한 기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13조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 날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3. 낙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제14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토지 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 3 장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1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서 남은 이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16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몹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간다.

제18조 토지이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이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권 판매신청 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는다.
3.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제19조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토지이용권

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제22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받는 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는 자는 저당하는 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이용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을 해야 한다.

제24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는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 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25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

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 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제26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 기간 안에 저당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이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일 안으로 토지이용권 저당등록 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 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값이다.

제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제30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 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많은 토지개발부문은 임차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의 합의밑에 5년 안에 분할해 둘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대해서는 해당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제31조 협상, 경매를 통해 토지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토지임대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제32조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연속 50일간 물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임차한 토지의 이용자는 해마다 국가가 정한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덜어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제 5 장 토지이용권의 반환

제34조 토지이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토지를 40년이상 임차할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 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해 줄 수 있다.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이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이용권 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36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이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이용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을 자기비용으로 철거하

고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토지이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여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하여준다.

제 6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9조 토지이용증이 없이 토지를 이용하였거나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켰거나 토지이용권을 양도, 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저당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40조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총투자액의 50%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41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한급 높은

기관에 신소청원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저당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토지임대법시행규정

1994. 9. 7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공화국 영역 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외국인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제 3 조 임대한 토지의 소유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다.

토지를 임차한자(이 아래부터는 토지임차자라 한다)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만을 가진다.

땅속 또는 물밑에 있는 천연자원, 매장되어 있거나 은닉된 문화유적유물, 귀금속과 같은 가치물은 토지리용권에 속하지 않는

다.

제 4 조 토지임대와 관련한 사업은 국토관리
기관이 한다.

국토관리기관에는 중앙국토관리기관과 지
방국토관리기관(도, 시, 군 국토관리기관)
이 속한다.

중앙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감
독통제사업을 하며 도국토관리기관이 제기
한 토지임대계획을 심사 승인한다.

도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차자와 토지임대
차계약을 맺고 리행하며 시, 군 국토관리
기관은 토지임대와 관련한 등록사업을 한
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토지는 자유
경제무역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
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임대한다.

제 5 조 합병,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
는 공화국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
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는 도국토관리
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토지
임대기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토지리
용권을 가질 수 있다.

기관, 기업소가 합병, 합작 기업에 출자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 6 조 토지의 임대기간은 토지용도와 투자 내용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최고 50년을 넘을 수 없다.

제 7 조 임차한 토지리용권은 토지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저당할 수 있다.

제 8 조 토지임차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토지임차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토지를 관리 리용한다.

제 2 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 9 조 토지의 임대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희망자 사이에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 10 조 협상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희망자 사이에 임대료, 투자

및 개발조건을 비롯한 임대차조건을 직접 합의한 다음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조건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의 개발상태
8. 이밖의 필요한 자료

제12조 토지임차희망자는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차하려고 할 경우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받은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토지이용신청서를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토지이용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설 또는 거주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임차자의 이름과 국적 또는 기업의

명칭, 법정대표

2. 임차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3. 토지임차자의 법정주소
4. 토지의 용도
5. 건설총투자액
6. 건설완공기일
7. 임차기간
8. 임대료와 그 지불화폐 및 지불방식
9. 이밖의 필요한 사항

제14조 기업창설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에는 지대당국 또는 정무원대의경제기관의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창설승인서 또는 그 사본이 포함된다.

거주승인을 확인하는 문건에는 거주지 출입국사업부서의 거주 등록 또는 승인확인서가 포함된다.

제15조 기업을 창설하지 않고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려는 희망자는 토지리용신청문건에 투자승인확인서와 자금담보 또는 신용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토지리용신청문건을 받은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신청문건을 20일 안으로

심의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토지 임대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제되어야 한다.

1. 토지 위치, 면적
2. 임대차 목적과 기간
3. 토지의 용도, 리용범위
4. 총투자액, 건설투자액
5. 단계별 투자액
6. 건설기간(단계별 건설계획, 건설완공기일)
7. 임대료 및 사용료와 그 지불방법
8. 특혜조건
9. 제재 및 분쟁해결방법
10. 이밖의 필요한 사항

제18조 토지의 입찰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규모가 크거나 주요한 개발대상의 토지 임대에 적용할 수 있다.

입찰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차희망자들이 지정된 기간안에 임대료, 투자 및 개발

조건을 비롯한 임차조건을 토지임대기관에 비공개적으로 제출하게 하며 토지임대기관이 입찰에 참가한자(이 아래부터는 응찰자라 한다)들 가운데서 유리한 임차조건을 제기한 임차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토지의 입찰은 지대당국이 조직한다. 지대당국은 토지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입찰문건의 작성 및 배포
2. 입찰과 관련한 상담
3. 응찰자의 자격심사
4. 개찰
5. 입찰심사조직과 낙찰자의 선정
6. 낙찰통지서의 발송
7. 이밖의 입찰과 관련한 업무사업

제20조 토지의 입찰문건에는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날자, 입찰절차, 입찰보증금과 같은 것을 밝힌 입찰안내서와 토지입찰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초안, 토지자료와 같은 문건이 포함된다.

제21조 토지의 입찰은 출판보도수단을 통하여 응찰자를 모집하는 공개입찰의 형식으로

로 하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토지입찰문건을 개별적으로 보내어 응찰자를 모집하는 지명입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 응찰자가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입찰문건을 산다.
2. 토지입찰문건을 연구한 다음 토지입찰서에 해당한 내용을 써넣는 방법으로 입찰서를 작성한다.
3.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일안에 입찰보증금을 낸다.
4. 기업책임자의 도장을 찍은 토지입찰서를 봉인한 다음 입찰함에 넣거나 정한 장소에 보낸다.

제23조 입찰함에 넣었거나 정한 장소에 보낸 입찰서는 다시 꺼내거나 찾을 수 없다. 입찰서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입찰서의 접수기간이 끝나기전에 변경시킨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내고 원래의 입찰서를 폐기시킨다

는 서면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대당국은 응찰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한 장소에서 입찰서를 공개적으로 개찰하며 응찰자들이 제기한 입찰가격을 공개하고 예비당선자들을 발표한다.

제25조 지대당국은 경제실무일군과 전문가, 법률가, 공증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들을 망라하여 토지의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제26조 토지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개찰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예비당선자들이 제기한 입찰가격과 개발계획, 자산과 신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락찰자를 결정한다. 평가결과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락찰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 입찰서를 부결시킬 수 있다.

제27조 토지임대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락찰자에게 락찰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안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

보증금에 대한 리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8조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토지임대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락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차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락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29조 토지의 경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부동산개발용지, 금융, 상업, 관광 및 오락 용지와 같은 경쟁성이 강한 토지의 임대애 적용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토지의 임대애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 임차희망자들을 모여놓고 공개적으로 임차경쟁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 토지경매의 조직은 토지임대기관이 한다.

토지임대기관은 경매하는 토지의 면적, 위치, 임대차계약의 기본조건, 토지의 경매 장소와 날자, 절차, 보증금 같은 것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토지의 경매에 참가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금 및 투자능력을 확인하는 문건을 구비하고 정한 보증금을 낸 다음 경매참가번호를 받는다.

제32조 토지의 경매는 기준가격을 공포하고, 그에 기초하여 응찰자들 사이의 가격경쟁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자로 된다.

제33조 경매를 통한 토지임대차계약은 낙찰되는 날부터 7일 안에 맺어야 한다.

제34조 토지임대기관은 낙찰되지 못한 응찰자들의 보증금을 경매가 끝나는 차제로 돌려주어야 한다.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임대료의 10%에 해당한 금액을 리행보증금으로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리행보증금은 리자를 계산하지 않으며 보증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대료의 지불에 리용할 수 있다.

토지임대기관은 임차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정한 기간안에 리행보증금을 물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리행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임차희망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락찰자의 경매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제36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임차자가 계약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물었을 경우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은 임차자는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그것을 등록한 때로부터 임차자에게 넘어간다.

토지임차자는 리용권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를 리용할 수 없다.

제3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 정한 용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정한 토지용도를 변경시키려는 토

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에 용도변경내용, 투자규모변경내용 같은 것을 밝힌 토지용도변경승인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9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등록할 때 중앙재정기관이 정한 등록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 3 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4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리용권을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의 양도에는 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이 포함된다.

제41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 수 없다. 양도받은 토지의 리용기간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임차하여야 한다.

제42조 판매, 재임대, 증여를 통한 토지리
용권의 양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임차하였거나 토
지임차자로부터 판매, 교환 형식으로 양
도받은 토지의 리용권이어야 한다.
2.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료 전액을
문 토지의 리용권이어야 한다.
3. 토지임대차계약에 지적된 기한과 조건
에 따라 투자와 건설을 한 토지의 리용
권이어야 한다.

제43조 토지리용권을 판매, 증여, 상속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에
밝힌 토지리용과 관련한 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도받은 자에게 넘어간다.

토지임대기관과 맺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지
적된 모든 사항은 양도계약에 밝히지 않았
다 하더라도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제44조 토지리용권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
기타 부착물의 리용권 또는 소유권과 분리
시켜 양도할 수 없다.

제45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
을 값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판매는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값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제46조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려는 자는 구매
자와 양도(매매)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토지임대기관에 토지리
용권 판매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47조 토지리용권 판매신청서에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임차기간 및 리용한 기
간, 판매목적, 판매가격, 임대료 및 사용
료 납부정형, 구매자의 이름과 소속, 기업
의 업종 같은 것을 밝히고 임대차계약서와
양도(매매)계약서사본, 구매자의 투자능력
을 확인하는 확인서 또는 신용담보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권 판매신청
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
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9조 토지임대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리용권 판매신청을 부결할 수 있다.

1. 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에 맞지 않을 경

우

2. 토지리용권양도(판매)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와 어긋나게 작성되었을 경우
3. 구매자의 투자 및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격을 비롯한 매매조건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제50조 토지리용권을 판매하였거나 구매하였을 경우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토지리용권의 취소등록을 하며 구매자는 토지리용권 명의변경 등록을 한다.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리용권의 매매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51조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토지임차자는 이미 구매자에게 제기한 판매조건을 토지임대기관의 구매에 불리하

게 수정제기할 수 없다.

제5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 수 있다.

토지재임대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그 리용권을 소유한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를 개발하여 다시 제3자에게 리용권을 빌려주는 형식의 토지양도이다.

제53조 토지의 재임대는 임대차계약에 토지를 개발한 다음 재임대를 허용한 토지에 한한다.

제54조 토지를 재임대하려는 자는 토지의 양도(재임대)계약을 맺고 토지임대기관에 토지재임대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재임대신청서는 재임대하려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받는 자의 이름 또는 기업명칭, 업종 같은 것을 밝히고 임대차계약서사본, 양도(재임대)계약서사본, 토지를 재임대받는 자의 투자능력을 확인하는 문건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재임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6조 토지를 재임대한 자와 재임대받은 자는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재임대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토지재임대계약은 등록수속을 끝낸 순간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57조 토지를 재임대한 자는 재임대받은 자가 계약에 맞게 임대물을 관리 리용하도록 요구하며 정한 임대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8조 토지를 재임대한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재임대한 토지의 보호, 류실방지, 류실된 토지의 복구 사업을 하여야 한다.
2. 재임대한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의 수리 및 보수 사업을 하여야 한다.
3. 재임대받은 자의 정상적인 토지리용을 방해하는 봉락, 침몰과 같은 재해요소의 방지 및 제거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토지를 재임대받은 자는 토지양도(재임대) 계약에 따라 토지를 리용할 권리를 가지며 토지를 재임대한 자가 이 규정 제58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기 부담으로 그 의무를 수행하고 해당 비용을 임대료에서 삭감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토지를 재임대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토지양도(재임대) 계약에 정한대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토지양도(재임대) 계약의 요구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3. 토지의 리용권을 재양도할 수 없다.
4. 토지재임대자의 승인없이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에 개조 또는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5. 토지를 정히 다루어야 하며 그에 손상을 주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임차기간이 끝난 임대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61조 토지재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토지재임대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관, 기업소나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증여는 토지임차자가 토지리용권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넘기는 형식의 양도이다.

제63조 토지리용권을 증여하려는 자는 증여문건을 작성하고 토지임대기관에 토지리용권증여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권증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검토한 다음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4조 토지리용권을 증여하는 자와 증여받는 자는 증여한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증여받은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질서의 토지리용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와 같다.

토지리용권 명의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기관의 증여세 납부확인서를 내야 한다.

제65조 증여하는 토지리용권은 명의변경등록을 한 순간부터 증여받는 자에게 넘어간다.

토지리용권의 명의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증여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66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의 상속은 토지리용권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법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자 또는 유언이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자에게 토지리용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형식의 양도이다.

제67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으려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거주지의 신분등록기관 또는 재판소가 발급한 상속확인서를 해당 거주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제68조 토지임대기관은 상속확인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검토하고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9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으려는 자는 상속시키는 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안에

상속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안에 상속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리용권은 자동적으로 토지임대기관에 넘어간다.

제70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은 자는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의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토지임대기관의 상속확인문건, 재정기관의 상속세 납부확인서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제71조 토지리용권을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에 정한 토지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는다.

토지임대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는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과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7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저당할 수 있다.

토지리용권의 저당은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부의 상환담보로 세우는 행위이다.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제73조 토지리용권을 저당하려고 할 경우에는 저당하는 자(이 아래부터 저당자라 한다)와 저당받는 자(이 아래부터 저당권자라 한다)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토지저당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리용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 토지저당계약을 맺은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리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토지저당권은 등록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5조 토지리용권의 저당자는 저당기간에도 토지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토지저당자가 저당한 토지리용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76조 저당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당 받은 토지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1. 저당자가 기한이 되도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저당자가 저당기간안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파산당한 경우
3. 저당자가 저당기간안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자가 없을 경우와 상속자가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제77조 저당받은 토지리용권을 처분하려는 저당권자는 토지임대기관에 저당물처분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당물 처분신청서에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저당자와 저당권자, 저당기일, 채무액, 저당물의 채권상환담보범위와 처분형식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저당물의 채권상환담보범위는 원금상환, 리자상환의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과 저당물의 평가비용, 경매비용과 같은 저당권실시비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제78조 토지임대기관은 저당물처분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

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토지저당계약내용에 맞지 않거나 이 규정 제76조에 정한 저당물의 처분조건이 명확치 못할 경우에는 저당물처분신청을 부결할 수 있다.

제79조 저당물의 처분은 경매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저당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저당권자들이 협의하여 처분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에서 기타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상환받는다.

저당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저당권을 국토관리기관에 등록한 순위대로 상환받는다.

제80조 저당권자가 처분한 저당물을 취득한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1조 저당권자가 처분한 토지리용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차 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

용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과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82조 토지리용권에 대한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된다.

1. 저당자가 채무를 상환하였을 경우
2.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경우
3. 저당권자와 저당자가 합의하여 채무상환을 다른 재산으로 대치하는 경우

제83조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저당권이 소멸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토지리용권 저당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4조 토지리용권의 양도 또는 저당과 관련한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 등록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 4 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제8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값이다.

제86조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기준임대료에 기초하여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차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7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입찰과 경매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 입찰 및 경매기준가격은 지대당국이 정하며 락찰자가 제기한 가격을 임대료로 한다.

제88조 토지임대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에 토지개발비를 포함시켜 받아야 한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된다.

제89조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임대료가 2,000만원 이상되는 토지개발부문의 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의 합의밑에 임대료를 5년안에 분할하여 물 수 있다. 이 경우 미납금에 해당하는 리

자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미납금에 대한 리자률은 토지임대기관과 임차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90조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련속하여 50일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불한 임대료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제91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는 소재지 재정기관에 해마다 정한 토지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리용한 것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요금이다.

제92조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토지사용료는 4년동안 변동시키지 않으며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변동폭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93조 토지사용료의 납부자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
2. 판매를 통하여 토지리용권을 넘겨받은 자
3. 토지를 재임대한 자
4. 합병 또는 합작 기업(토지를 출자 몫으로 하였을 경우에 한함)

제94조 토지사용료는 토지리용권을 등록한 날부터 계산하며 해마다 12월 20일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토지사용료를 지불할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달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사용한 달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계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95조 토지임대기관은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하여 투자규모와 내용, 경제적 효과성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덜어주거나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 5 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제96조 임대기간이 끝난 토지리용권은 토지

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40년 이상 임차한 토지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안에 준공한 건설 총투자액 2,000만원 이상되는 기본건물에 대하여서는 해당 잔존가치를 보상하여 줄 수 있다.

제9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토지리용증을 토지임대기관에 반환하고 토지리용 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8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토지임대기관에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검토한 다음 토지리용연기를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9조 토지리용연기신청서에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개발정도와 연기하려는 리유, 기일, 투자계획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토지리용기간을 연기하여 토지를 새로 개

발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토지리용연기신청서에 투자의향서와 용도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 토지리용연기를 승인받은 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임대료를 문 다음 토지리용증을 재발급받으며 토지리용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으로 토지임대기관이 넘겨받지 않는 건축물, 설비와 임시건물, 저장탱크, 창고, 구축물, 야적장, 구내철길과 같은 부대시설물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임차자가 토지를 정한 기간안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에 그 사유를 알리고 토지정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비용을 토지임차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102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토지임대기관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력적 사정이 있거나 공공리익을 위하여 도시건설계획을 변경시켜야 할 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한 전에 법적수속을 걸쳐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리용권을 취소하기 6개월전에 토지임차자에게 토지리용권의 취소리유, 토지의 위치와 범위, 취소기일 같은 것을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제103조 토지임대기관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자에게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주거나 해당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토지를 교환해주는 경우 토지임대기관과 임차자는 리용권을 취소하는 토지와 교환한 토지의 값을 합의결정하여 차액을 청산한 다음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며 임차자는 토지리용증을 다시 발급받고 해당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제 재 및 분쟁 해결

제104조 토지를 리용증이 없이 리용하거나

리용권을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300원부터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105조 토지의 용도를 승인없이 변경시켰거나 임차한 토지면적을 비법적으로 늘였을 경우에는 기한을 주어 고치게 하고 4,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제106조 토지리용권을 승인없이 양도 또는 저당하거나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 또는 저당 처분을 무효로 하고 정도에 따라 토지리용권 또는 저당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7조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한 기간안에 투자하지 않거나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무를 리행하도록 재촉하며 그래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한 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매일 투자를 미달한 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정한 기한안에 투자하여야 할 투자액의

50%을 투자하지 못하였거나 토지를 계약된대로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8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한급 높은 기관에 신소청원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9조 토지의 임대차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데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의 법인인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공화국의 법인이 아닌 외국기업이 속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의 재정부기 계산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

기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부기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제 6 조 이 법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7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

제 2 장 기업소득세

제 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우리나라 안에서 얻은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와 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 지사, 출장소, 새끼회사 같은 것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 9 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 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 것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10 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분기

소득세예정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며, 년도가 끝난후 2개월 안으로 연간 소득세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에 하며, 연간종합계산은 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10%로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 공화국 영역 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 외국기업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와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

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년 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4.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부분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16조 외국투자자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 령역 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분에 재투자하는 경

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소득세액을 바친다.

제 3장 개인소득세

제17조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배당소득
3.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증여소득

8. 개인기업소득

제19조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 로동보수액이 2천원 아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대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이 법 부록 2에서 정한대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의한 소득세율은 25%로 한다.

제20조 로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 초과 루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증여에 의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은행

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고정재산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에 의한 소득세는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 달 15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한다.

공화국 은행에 저축성 예금을 한 돈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에 예금한 돈에 의한 리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달 10일 안으로, 개인기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다음 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3.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

작성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 4 장 재산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한다.

제26조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 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안으로 등록취소 수속을 한다.

제27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률은 이 법 부록 3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29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 달부터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0일 안으로 재산소유자가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 5 장 상속세

제31조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 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 상속세의 과세대상액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제34조 상속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4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해당하는 세를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6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때
로부터 3개월 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6 장 거래세

제37조 생산물 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 투
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
입금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
문에서는 봉사수입금

제39조 거래세의 세율은 이 법 부록 5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40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생산물 판매액에 해당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상업부문의 거래세는 품종별 상품판매액에 해당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봉사수입금에 해당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1조 거래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판매자가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각종 봉사부문의 거래세는 달마다 봉사기관이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면한다.

1.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0%로 한다.

제 7 장 지방세

제43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다.

제45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소 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 수입으로 한다.

제46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 로임총액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

다.

2. 거주한 외국인이 바치는 도시경영세는 월 수입에 1%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하거나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4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기업이나 광업권, 어업권 같은 것을 등록할 경우와 기술자격면허증 같은 증서를 받을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바쳐야 한다.

제48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정해진 세액을 해당 등록단위와 면허증 발급단위가 받아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9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바쳐야 한다.

제5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자동차 리용자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

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한데 따라 자동차리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52조 등록면허세와 자동차리용세의 세액은 이 법 부록 6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 8 장 제재 및 신고청원

제53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5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

린다.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세액의 4배까지 물린다.

제55조 이 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6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소청원은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해당 상급기관에, 소송은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57조 재정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의 내용을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록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률표

월 로 동 보수액(원)	세 률
2천1~3천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천1~4천	40원+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천1~5천	90원+4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5천1~6천	1백50원+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6천1~7천	2백20원+6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7천1~8천	3백원+7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8천1~9천	3백90원+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9천1~1만	4백90원+9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만1이상	6백40원+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록 2〉 증여에 의한 소득세률표

증여소득세(원)	세 률(%)
1만1~10만	2
10만1~20만	4
20만1~40만	6
40만1~60만	8
60만1~80만	10
80만1이상	12

〈부록 3〉 재산세의 세률표

구	분	세 률(%)
건	물	등록값의 1
선	박	등록값의 1.4
비	행 기	등록값의 1.4

〈부록 4〉 상속세의 세률표

증여소득세 (원)	세 률(%)
20만1~35만	6
35만1~60만	8
60만1~80만	10
80만1~1백20만	12
1백20만1~2백50만	14
2백50만1~4백만	16
4백만1~8백만	18
8백만1~2천만	20
2천만1~5천만	25
5천만1이상	30

〈부록 5〉 거래세의 세률표

부 문 별	세 률 (%)
생 산 부 문	생산물판매액의 1.5~20 술, 담배와 같은 제한하는 상품은 21~60
상 업 부 문	상품판매액의 2
봉 사 부 문	봉사수입금의 2~4

구 분	세 액(원)
1. 등록면허세	
1) 기업등록	
설립등록	건당 5백~1천
변경등록	건당 40
취소등록	건당 40
2) 광업권등록	
처음등록	광구당 1천2백
변경등록	광구당 10
취소등록	광구당 10
3) 어업권등록	
처음등록	건당 1천
변경등록	건당 10
취소등록	건당 10
4) 기술자격면허증 발급	건당 20~1천
2. 자동차리용세	
승용차	대당 50
버 스	
12석까지	대당 90
13~30석	대당 1백
31석이상	대당 1백20
화물자동차	적재톤당 20
특 수 차	대당 50
자동자전차	대당 20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9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을 정확히 집행
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이나 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공화국 영역 안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
거나 소득을 얻은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
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투자
기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외국기업에는 공
화국 영역 안에 상주기구를 설치하고 경영
활동을 하거나 상주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공화국 영역 안에서 이자, 배당금, 임대료

와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외국투자기업이라 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 부과와 징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 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재정기관에는 재정부와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가 포함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무정형을 검열하는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제때에 보여줘야 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가 변동되었거나 통합, 분리되었을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업종과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

관에 세무변경 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등록 취소수속을 하기 20일 전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5 조 세무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등록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 세무등록 신청서에 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과 주소
2. 기업 등록날자, 등록번호
3. 기업의 경영방식과 업종
4. 경영기간
5. 종업원 총수(그중 외국인수)
6. 부지 면적
7.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 번호
8. 기업의 책임자와 재정부기 책임자의 이름

외국인은 세무등록 신청서에 이름과 국적, 주소, 여권번호, 체류증 발급날자, 체류기간을 밝혀야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거나

세무등록취소 수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세무등록취소 신청서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 및 취소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 6 조 세무에 이용되는 문서양식은 재정부가 정한다. 세무문서는 조선글로 써야 한다. 다른 나라 글로 쓴 경우에는 그 밑에 조선글로 번역하여 써야 한다. 세무문서에는 기업의 도장과 기업책임자 및 재정부기 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 조 세무와 관련되는 문서(전자계산기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테프와 원판)는 거래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서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5년(재정부기결산서, 고정 재산문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8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해당 시기의 외화환산율에 따라 한다.

제 9 조 세금은 수익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거

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0조 세금은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세금납부서를 내는 것과 함께 해당 은행에 납부한다. 세금을 받은 은행은 신고납부자 또는 공제납부자(이 아래부터는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세금납부 영수증을, 재정기관에는 세금납부 통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귀국(임시출국은 제외)하려는 외국인은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출국수속을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규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 포함된다.

제 2 장 기 업 소 득 세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된다.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부문의 생산물 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 부문의 소득, 상업(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 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수, 체신, 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임 및 요금 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기타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속한다.

1. 이자소득
2. 이익배당소득
3. 재산의 임대 및 양도소득
4.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5. 기술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봉사를 하여 얻은 소득
6. 폐설물 및 부산물 처리에 의한 소득
7. 이밖의 소득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업소득세의 납세연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세연도 안에 영업을 시작한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해 해산을 선포한 날까지로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원가와 기타 지출, 거래세를 공제하고 남은 결산이윤에 부과한다. 원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 공업부문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물자구입경비, 새제품 생산비, 노임,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직장 및 회사 관리비, 판매비, 보험료
2. 상업부문에는 상품비와 유통비(수송비, 보관비, 포장비, 용기 손모 및 수리비, 상품자연감모비, 영업용 연료 및 전력비, 노임, 대외판매 수속비, 비품비, 난방비, 조명비, 수도사용료, 사무비, 통신비, 여비, 선전비, 대외사업비, 노동보호비, 문화사업비, 대부이자, 보험료, 이밖의

유통비)

3. 봉사부문에는 급양원자재비와 유통비, 교통운수 운영비, 체신운영비

기타 지출에는 환자시세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공, 재포장하는데 든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6조 작업기간이 1년이상 걸리는 건설 및 조립, 설치공사, 대형기계설비의 가공,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마다 그 해에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14%
2.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윤의 25%
3.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공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

윤의 10%

4.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10%,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얻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득액의 20%

제18조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 또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고 연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분기결산이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액의 1/4을 예정납부한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분기 재정분기 결산서를 기업소득세 납부에 앞서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납세연도가 끝난 때로부터 2개월 안으로 연간 기업소득세 납부서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분기 결산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연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 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

청과 돈자리번호, 결산이윤, 세율,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재정부기 결산서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이익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정재산 감가상각금계산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23조 공제납부자는 수익금을 지불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 지불항목, 지불금액, 세율, 납세금액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납세담보금으로 세우고 청산안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담보금은 기업소득세로 돌릴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

산하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 통합, 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납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채무의 이행에 앞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로부터 15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본사가 종합하여 납부하며 외국기업의 지사가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지사가 신고납부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와 지사의 기업소득세율이 부문과 지역에 따라 다를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지사를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다른 나라에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제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이 이 규정에 밝힌 세율로 계산한 기업소득세액과 같거나 그 보

다 적을 경우에는 실지 납부한 소득세액만큼 공제하여 주며 초과한 부문에 대한 기업소득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제27조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 정부 또는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 또는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28조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장려하는 부문에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이 포함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

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준다. 금융기업이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 수 있다.

제30조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 되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 등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1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기간은 이윤이 난 해로부터 연속 계산한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이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년도의 결산이윤에서 메꿀 수 있으며 다음 년도에도 메꾸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속하여 해마다 메꿀 수 있으나 4년을 넘을 수 없다.

제33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

업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업종, 이윤이 생긴 년도, 총투자액,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를 밝히고 해당 기업설립 심사승인기관이 증명하는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제34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 및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 되기 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을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하부구조건설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다른 부문은 이미 바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되돌려 받거나 다음에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와 함께 재투자액과 경영기간을 증명하는 기업설립 심

사승인기관의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36조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기간 안에 임시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체류 또는 거주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7조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에는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 개인기업소득(개인업 소득에 한함)이 포함된다.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할 소득이 현물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것을 취득한 때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는 노임, 상금, 장려금, 가급금과 강의, 강연, 투고, 번역, 설계, 제도, 설치, 수예, 조각, 그림, 창작, 공연, 부기, 체육, 의료, 상담과 같은 일을 해 얻은 소득이 속하며 배당소득에는 이익배당금, 잉여금의 분배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공업소유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해 받은 소득이 속하며 기술비결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련기능,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소설, 시,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극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 속하며 이자소득에는 예금·채권에 의한 이자소득이, 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득에는 건물, 기계, 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증여소득에는 화폐재산, 현

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을 증여받은 소득이 속하며 개인업소득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상점, 음식점, 수리소 같은 것을 차려놓고 자체로 상업 및 봉사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이 속한다.

제38조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노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월노동보수액이 2천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1에 정한 초과누진세율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이 1만원까지인 경우 면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의 개인소득세율은 이 규정 부록 2에 정한 세율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업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율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제39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고정재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의 20%(노력비, 포장비, 수수료와 같은 비용)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0조 개인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 안으로 공제납부한다.
2.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 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 있으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3.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달 15일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4.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소득이 있는 다음분기 첫달 10일 안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공제납부자는 공제한 개인소득세의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1조 공화국 영역 안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다음분기 첫날 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납세의무자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개인소득세액 범위 안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문건에는 해당 나라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문건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2조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 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은 협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 이자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3.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의한 이자

제 4 장 재산세

제43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에는 살림집, 별장, 부속건물이 포함되며 선박, 비행기에는 자가용 배, 자가용 비행기 같이 것이 포함된다.

제44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을 임대하였거나 저당잡혔을 경

우에도 재산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소유자가 재산소재지에 없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재산세납부 의무자로 된다.

제45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 건물, 선박,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것을 소유한 때로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재산등록신청서를 내고 재산가격을 등록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넘겨 받은 자가 공화국 영역 밖에 있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을 등록한다. 재산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재산의 이름, 단위, 수량, 건평(톤수), 처음 값, 대보수비, 내용년한, 사용한 년한, 건설(제작)년도, 평가한 가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46조 등록하는 재산의 가격은 국가 가격 재정기관이 평가하고 공증기관이 공증한 가격으로 한다.

제47조 등록된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 평가하고 공증가격으로 2월 안에 해당 재

정기관에 재등록한다.

제48조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와 재산을 폐기했을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0일 안으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으로 한다.

제50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에 이 규정 부록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1조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를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 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분기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구입하였거나 건설한 건물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구입하였거나 준공한 달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상속세

제53조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재산을 상속 받은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화폐재산, 유가증권, 예금, 저금 및 보험금, 공업소유권, 저작권, 토지이용권, 채권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 포함된다.

제54조 상속재산의 가격은 상속받은 때의 재산이 있는 현지시장가격으로 한다.

제55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상속자가 부담한 장례비용, 상속기간에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든 비용, 재산상속과 관련한 공증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시키는 자의 채무액, 장례비용, 재산의 보존관리에 든 비용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상속자는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으로 상속재산액, 공제액, 과세대상액, 상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상속세 납부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속세 공제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음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세 공제신청서에는 상속자의 이름과 주소, 상속세의 공제항목과 금액을 밝힌다.

제57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현물재산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산종류,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제58조 상속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3년안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상속액이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 6 장 거래세

제59조 외국투자기업과 개인업을 하는 외국인
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에 대해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한 생산물과 수입
한 물자를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
2. 상업(무역포함)부문에서는 상품을 판매
하여 얻은 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 호텔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는 운임, 대부이자와 예금
이자와의 차액, 요금과 같은 봉사수입금

제60조 거래세는 생산, 상업, 봉사부문의
수입금에 부록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다. 부문별 세율에 따르는 전개된 항목
의 세율은 재정부가 정한다.

제61조 납세의무자는 월중에 이루어진 수입
금을 종합하여 다음달 10일 안으로 재정기
관에 거래세 납부서를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와 생산한 제품을 국가적 요구에 의해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제63조 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을 포함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6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분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 덜어준다.

제 7 장 지방세

제6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가 포함된다.

제66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의 월노임총액으로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로 한다.

제67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월노임총액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신고납부한다.
2.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및 재산판매소득을 비롯한 월수입에 1%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마다 다음달 10일 안으로 본인이 신고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68조 기업을 등록하거나 광업권, 어업권을 등록하는 외국투자기업과 면허증, 자격증을 받는 외국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포함된다.

제69조 등록면허세는 건당 이 규정 부록 6에 정한 세액에 따라 납부한다.

제70조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에는 승

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 특수차가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연유차, 시멘트운반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트랙도르 같은 것이 속한다.

제71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자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신청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소, 자동차의 번호, 종류, 좌석수 또는 적재중량, 취득날자를 밝혀야 한다.

제72조 자동차이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이 규정 부록 7에 정한 세액에 따라 신고 납부한다.

제73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하여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하여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차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8 장 제재 및 신고청원

제74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끝난 다음달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57조 재정기관은 세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물린다.

1. 정한 기일안에 세무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기 결산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3. 장부, 전표, 증빙문건을 위조, 폐기하였거나 원가, 비용, 소득액 같은 것을 사실과 맞지 않게 계산하여 탈세한 경우에는 탈세액을 받는 것과 함께 탈세액의 4배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76조 재정기관은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

자에게 벌금통지서를 보내며 벌금을 물어야 할 대상자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물어야 한다.

제7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78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세금을 받은 재정기관의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재정기관은 30일 안으로 신소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79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그것을 처리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록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률표

월 로 동 보 수 액(원)	세 륜
2,001~3,000	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1~4,000	40원+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4,001~5,000	90원+4,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
5,001~6,000	150원+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6,001~7,000	220원+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
7,001~8,000	300원+7,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
8,001~9,000	390원+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9,001~1만	490원+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만 1이상	640원+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부록 2〉 증여에 의한 소득세률표

증여소득세 (원)	세 륜(%)
1만1~10만	2
10만1~20만	4
20만1~40만	6
40만1~60만	8
60만1~80만	10
80만1이상	12

〈부록 3〉

재산세의 세률표

구	분	세 률(%)
건	물	등록값의 1
선	박	등록값의 1.4
비	행 기	등록값의 1.4

〈부록 4〉

상속세의 세률표

증여소득세 (원)	세 률(%)
20만1~35만	6
35만1~60만	8
60만1~80만	10
80만1~120만	12
120만1~250만	14
250만1~400만	16
400만1~800만	18
800만1~2,000만	20
2,000만1~5,000만	25
5,000만1이상	30

구 분	세 률(%)
1. 생산부문	
1) 전기제품	4~10
2) 연료제품	2~ 7
3) 광물제품	4~ 5
4) 금속제품	4~ 7
5) 기계 및 설비	4~ 5
6) 화학제품	2~10
7) 건재제품	2~13
8) 고무제품	4~ 9
9) 섬유제품	1.5~10
10) 신발제품	3~ 4
11) 일용제품	3~15
12) 전자제품	4~14
13) 가죽 및 털제품	5~ 8
14) 기타공업제품	4~15
15) 식료품	3~20
16) 술, 담배와 같은 제 한하는 상품	21~60
17) 농산물	3~ 4
18) 축산물	2~ 5
19) 수산물	4~10
2. 상업부문	2
3. 봉사부문	2~ 4

구 분	세 액(원)
1. 기업등록	
설립등록	건당 장려부문기업 500 그밖의 기업 1,000
변경등록	건당 40
취소등록	건당 40
2. 광업권등록	
처음등록	광구당 1,200
변경등록	광구당 10
취소등록	광구당 10
3. 어업권등록	
처음등록	건당 1,000
변경등록	건당 10
취소등록	건당 10
4. 면허증, 자격증 발급	
자 동 차	건당 20
의 사	건당 1,000
약 제 사	건당 500
회 계 사	건당 500

<부록 7>

자동차이용세액표

구 분	세 액(원)
승 용 차 버 스	대당/년 50
12석까지	대당/년 90
13~30석까지	대당/년 100
31석이상	대당/년 120
화물자동차	적재톤당/년 20
특 수 차	대당/년 50
자동자전차	대당/년 20

외화관리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수입을 늘이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 3 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국화폐,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 예금증서를 비롯한 외화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같은 귀금속이 속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공화국 영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 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을 쓰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원과 바꾸어야만 쓸 수 있다.

외화의 사고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 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제 7 조 조선원의 외국환자 시세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제 8 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결제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외화가 아닌 다른 외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상속할 수 있다.

제 10 조 이 법은 외화를 리용하는 우리나라

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외화의 리용

제11조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1.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무역 밖의 거래
3.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자본거래

제12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되는 외화를 조선원으로 바꾸어 자기 돈자리에 놓어야 한다.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만 써야 한다.

제14조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화국 국민은 외화를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보유하며, 그 기준이 넘는 외화는 우리나라의 은행에 팔거나 예금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은 국외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우리나라의 은행에 예금하거나 팔 수 있다.

제17조 은행은 외화예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자를 계산하여 준다.

제18조 공화국 영역 안에 상주하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 령사관, 무역대표부 같은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우리나라의 은행으로부터 대부 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화 리용에 대한 감독 통제는 외화 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연간 외화재정상태표를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 3 장 외화의 반출입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다.

제23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 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 범위 안에서만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내갈 수 있다.

제2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해당한 문건이나 세관신고서 없이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6조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령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들여왔던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 안에서만 내갈 수 있다.

제27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령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 까지를 공화국 령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 4 장 제 재

제29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외화와 물건을 몰수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0조 외화관리 질서를 어겨 외화적 손해

를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킬 수 있다.

제31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과 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외화관리법시행규정

1994. 6. 27 정무원 결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을 정확히 관철하여 외화의 관리 및 리용 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외화를 관리하거나 리용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 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과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기관에는 대사관, 령사관, 무역 및 국제기구 대표부 같은 것이 포함되며 외국투

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 4 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화와 전환성이 없는 외화가 포함된다.

전환성있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외국 화폐(은행권, 보조화폐), 외화유가증권(외화로 표시된 국가채권,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주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 외화지불수단(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여행신용장, 송금증서, 지불지시서)과 기타 외화자금(전환성외화돈자리와 국제결제계산단위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 귀금속(장식품을 제외한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이 속한다.

전환성이 없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의 돈과 바꿀 수 없는 민족화폐와 민족화폐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이 속한다.

제 5 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외화관

리기관이 맡아 한다. 외화관리기관은 외화의 수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 지출을 통제한다.

제 6 조 외화관리기관은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 집행의 방법론적 지시를 만들고 외국환자은행과 외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업무범위를 승인하며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자의 기준시세를 정한다.

외화거래, 대외결제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조선원에 대한 외화현금교환시세와 외국환자의 결제시세, 대외결제 취급 수수료를, 외화의 예금, 저금, 대부 리자율은 무역은행이 정한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전문은행은 무역은행이다.

무역은행 밖의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할 수 있다.

제 8 조 정부들 사이에 맺은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르는 은행들 사이의 지불협정은 무역은행이 맺는다.

제 9 조 공화국 령역 안에서는 외화현금을

유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정된 은행 또는 외화교환소(외화교환대리소 포함)에서 조선원과 바꾸어써야 한다.

외화교환소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곳에 내올 수 있다.

제10조 외화에 의한 결제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돈자리(이 아래부터는 외화원돈자리라 한다)를 통하여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거래에 따르는 결제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공화국 영역 안에서 외화를 팔고 사거나 저금 또는 예금하며 저당잡히는 것과 같은 외화거래는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12조 조선원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와 환자거래에 리용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외화밖의 다른 외화로 거래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공화국 영역 안에서 생산 및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여 얻은 외화와 로동보수로 얻은 외화,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하여 왔거나 가지고 온 외화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것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4조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외화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관리하는 은행도 거래기관, 기업소의 외화리용에 대하여 감독통제할 수 있다.

제 2 장 외화의 리용

제15조 외화는 무역거래, 무역밖의 거래, 자본거래, 외화를 사거나 파는 것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는 상품의 수출입과 그와 직접 관계되는 거래가 포함된다.

무역밖의 거래에는 러비 또는 리자, 배당금, 경비, 유지비와 같은 지불거래, 봉사제공과 관련한 거래, 증여, 상속, 보증과 관련한 거래같은 것이 포함된다.

자본거래에는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외화지불수단 또는 채권의 매매, 증권의

발행 또는 취득, 부동산취득 같은 거래가 포함된다.

제16조 경제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는 거래 은행에 개설된 조선원 또는 외화원, 외화 돈자리를 통하여 무현금으로 한다.

조선원돈자리에는 공화국 영역 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는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외화로 전환할 수 없다.

외화원돈자리에는 전환성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한 돈을 넣는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로 전환할 수 있다.

외화돈자리에는 지정된 외화를 화폐별로 넣을 수 있다. 이 돈자리에 있는 돈은 임의의 시기에 요구하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 또는 외화로 지불할 수 있다.

조선원, 외화원, 외화돈자리의 잔고에 대하여서는 리자를 계산하여 주지 않는다.

제17조 대외경제거래에 따르는 외화결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및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기관, 기업소는 거래은행에 외화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원돈자리에는 기관, 기업소가 번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으며 외화의 지불도 외화원돈자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9조 공화국 령역 안에 상주하는 외국기관은 무역은행에 조선원 또는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조선원돈자리에는 두 나라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화국 령역 안에서 받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 조선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외화원돈자리 또는 외화돈자리에는 외국기관 유지비로 보내온 외화를 조선원으로 전환하여 넣거나 외화 그대로 넣으며 그것을 현금 또는 무현금으로 쓸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무역은행이나 공화국 령역 안의 다른 은행에 조선원 또는 외화원돈자리, 외화돈자리를 둘 수 있다.

조선원돈자리에는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활동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조선원을 넣으며 이 조선원은 지정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외화원돈자리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넣으며 이 자금은 공화국 영역 안에서 외화 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 거래에 쓸 수 있다.

외화돈자리는 다른 나라 또는 공화국의 무역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들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하는데 리용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합의하는 데 필요한 문건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2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 또는 외화를 은행에 외화원 혹은 외화예금돈자리를 두고 예금할 수 있으며 공화국국민 및 외국인(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은 은행에 외화와 바꾼 조선원이나 외화를 외화원저금돈자리 또는 외화저금돈자리를 두고 저금할 수 있다.

은행은 외화의 예금 또는 저금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정해진 리자를 계산하여

준다.

제23조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기관,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은 은행돈자리개설 신청서를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은행에 내야 한다. 은행돈자리개설 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은행거래에 쓰는 도장표와 기업창설승인서사본, 외화관리기관이 발급한 돈자리개설 승인서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하나의 대외결제은행에만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4조 은행은 돈자리에 있는 자금을 돈자리관리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낼 수 있으며 돈자리관리자는 돈자리 잔고범위안에서만 자금지출을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은행과 돈자리관리자 사이에 일정한 돈자리 잔고한도를 초과하여도 결제해줄데 대한 계약이 맺어졌을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잔고를 초과하여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자리잔고초과지불액에 대하여 정해진 리자를 받는다.

제25조 은행은 돈자리에서 일어난 거래의

당일 입출금통지서를 다음 업무일까지, 그 달에 있는 거래의 월계시서를 다음달 10일 까지 돈자리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돈자리관리자는 받은 입출금통지서를 다음 업무일까지, 월계시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해당은행에 알려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는 번 외화를 해당 거래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예금하거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에게 맡겨 둘 수 없다.

제27조 국가로부터 외화를 받아쓰는 기관, 기업소는 외화를 쓰려고 할 경우 외화관리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의 외화수입으로 계획에 예견된 외화 지출을 보장하게 되어있는 기관, 기업소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자기가 번 외화 범위 안에서 해당 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외화를 쓸 수 있다.

제28조 은행은 외화지출계획과 외화보유액 범위 안에서 외화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거래에서 생기는 재계산차액, 거래잔액, 수수료, 체선료, 위약금, 해약금과 같은 외화수입금을 그 수입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으로 거래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0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서 벌었거나 쓰다남은 외화 가운데서 전환성외화는 거래은행에 넣으며 비전환성외화는 해당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관에 맡기고 그 보관증을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대표기관에 맡긴 보관금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다.

제31조 비무역외화수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벌어들인 외화를 해당거래은행을 통하여 무역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는 비무역외화를 지정된 항목과 기준범위안에서만 써야 한다. 비무역외화를 쓰려고 할 경우에는 쓰려는 외화에 해당하는 조선원을 해당 은행에 넣어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에 나가 외화를 리용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건별로

정해진 기간안에 외화를 내준 은행에 가서
총화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는 외화관리기관의 승
인을 받아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지방채권,
회사채권, 출자증권 같은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5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
관은 정한 항목과 한도안에서만 외화를 써
야 한다.

제36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
관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이 없이 기관,
기업소의 외화를 보관하거나 리용할 수 없
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역 안에
돈자리를 둔 은행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한 외화를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넣으려는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공화국의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제3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 사이
의 거래업무를 할 수 있다.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
은 비거주자로부터 정기예금, 통지예금과
같은 예금을 받아들이거나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대부를 주며 약속수형을 발행
하거나 증권투자를 할 수 있다.

제40조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외국투자기업은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30일안에 그 돈자리에서의 외
화 수입, 지출과 관련한 문건을 외화관리
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외국투자기업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외화재정상태표와 손익
계산표, 외화수지보고표를 다음해 2월안으
로, 다음해 외화수지예산서를 그전해 11월
안으로, 분기외화재정상태표와 외화수지보
고표를 다음 분기 첫달 안으로 외화관리기
관에 내야 한다.

제42조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서 송금하여
왔거나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현금을 가지

고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에 팔거나 저금할 수 있다.

공화국 국민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2,000원에 해당하는 외화만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상되는 외화현금은 저금하거나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외화교환증명서나 외화현금지불문건에 지적된 범위안의 외화현금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제43조 공화국 국민은 송금하여왔거나 저금한 외화를 외화현금으로 찾을 수 없다.

저금한 외화를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 시기의 외화교환시세에 따라 내준다.

송금하여왔거나 예금 또는 저금한 외화를 다른 나라에서 쓰기 위하여 외화현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국증명문건을 확인하고 지불해 줄 수 있다.

제44조 공화국 영역을 떠나는 외국인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다시 외화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에 출국증명문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외화와 바꾼 조선원은 지정된 사업, 봉사부문에서만 쓸 수 있다.

개인들 사이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팔고 살 수 없으며 기관, 기업소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쓸 수 없다.

제 3 장 외화의 반출입

제46조 외화는 제한없이 공화국 영역 안에 들여올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개인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 현금지불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범위안에서 외화현금을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48조 외국투자가는 기업을 하여 얻은 리윤과 소득금,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공화국 영역 밖으로 세금없이 내갈 수 있다.

제49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외화자금을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1. 생산용 원료, 자재 및 설비 같은 것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

2. 경영용 물자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3. 다른 나라에 설치한 지사,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의 경비자금
4. 다른 나라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
5. 이밖에 따로 정한 자금

제50조 공화국 영역 밖으로 외화를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는 송금신청서를 거래은행에 내야 한다.

송금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송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문건, 채권자의 대금청구서 같은 증빙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화국 영역 안에서 발행한 회사채권, 출자증권과 같은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 내갈 수 있다.

제52조 공화국의 은행이 발행하였거나 판매한 여행행표, 여행신용장 같은 것은 해당한 증명문건이 없이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5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교환증 명문건이나 세관신고없이 외화현금, 외화 유가증권, 외화지불수단을 공화국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제54조 귀금속(국가가 수출하는 귀금속과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귀금속은 제외)을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서 구입한 장식품을 제외한 귀금속제품은 판매자가 발급한 증명문건에 따라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55조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 영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60%를 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가려는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사이에 상대방 화폐를 반출입할데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외화를 반출입한다.

제 4 장 제 재

제57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업무를 중지시키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준다.

1. 승인받은 업종밖의 외국환자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얻은 영업수익금을 몰수하거나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외화결제, 외화대부, 외화양도 질서를 어겼을 경우와 국가가 정한 질서밖에서 외화현금으로 물자를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결제 또는 대부, 양도한 외화와 거래한 물자를 몰수하거나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외화를 밀매하였을 경우에는 밀매한 금액을 몰수한다.
4.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를 예금 또는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10일 안으로 몰수하여 국가에 바치며 해당 예금 또는 보관액의 50%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이밖의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 조의 류사한 위반행위에 따라 한다.

제58조 외화관리질서를 어겨 국가에 외화적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외화로 보상시키고 손해액의 50%까지 벌금을 물린다.

제59조 벌금과 몰수금 지불을 거절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은행에 있는 기관, 기업소 돈자리에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

제60조 기관, 기업소와 국민에게 물리는 벌금은 벌금과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부과한다.

제6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과 이 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세 관 법

1993. 11. 1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세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무역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세관수속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관수속절차를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 3 조 국가는 세관검사방법을 개선하고 검사수단을 현대화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4 조 국가는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적용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

세를 높게 적용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 6 조 국가는 세관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7 조 이 법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우리나라 국경을 넘는 다른 나라 국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세관수속

제 8 조 세관수속은 짐과 운수수단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세관수속에 필요한 문건을 세관에 내야 한다.

제 9 조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국민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도착하면 몸짐과 돈, 유가증권, 따

로 부쳐오는 손짐을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우리나라의 국경역, 무역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과 그와 관련한 세관료금의 납부는 그 짐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한다.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자를 중계수송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우리나라 무역항을 거쳐가는 다른 나라 배에 실여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배의 선장이 한다. 선장은 배짐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관이 있는 곳으로만 들여오거나 내갈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관이 없는 곳으로 통과하거나 우리나라 해상에서 다른 나라와 물자를 주고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세관검사

제13조 세관은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짐과 운수수단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짐과 운수수단은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없다.

제14조 세관검사는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과 그밖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 몸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 배안에서도 할 수 있다. 세관은 이동세관검사를 하거나 우리나라 영토를 통과하는 다른 나라 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요금을 받는다.

제15조 세관은 국경역, 무역항 같은 세관검사지점에서 검사할 수 없는 짐에 대하여서는 짐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세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짐임자는 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신고받은 짐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운수수단의 짐칸, 손님칸, 선원실을 비롯한 필요한 곳을 검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과정에 우리나라에 들여오

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건과 통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봉인할 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 수 없다.

제17조 세관은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국가품질감독기관, 검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검사기관들과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한 기술감정을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세관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짐의 보관상태를 늘 검열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짐에 대하여서는 세관이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우리나라 무역기관과 합의없이 국경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의 짐은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부리울 수 있다.

제21조 잘못들여온 다른 나라의 짐, 국제우편물, 임자없는 짐, 남는 짐은 세관의 승인밑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세관검사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며 세관검사에 립회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이 관할하는 짐과 운수수단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내가려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을 뜯거나 다시 꾸리는 경우에도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짐을 나르는 기관, 짐관리자는 짐을 나르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그밖의 사고가 났을 경우 곧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편지, 인쇄물 속에 돈, 유가증권, 물건을 넣지 말며 소포속에도 편지나 돈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기념품을 가

지고 다닐 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제27조 이사짐, 상속재산은 허가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 수 있다. 이사짐, 상속재산이라도 통제품은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

제28조 장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리용하여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9조 무기, 탄약, 폭발물, 독약, 마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었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물건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제품은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없다.

제30조 당 및 정부 대표단성원, 외교일군, 국제기구성원 그밖에 따로 정한 일군의 몸짐과 손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있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물건과 통제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 수 있다.

제 4 장 관 세

제31조 세관은 관세를 정확히 물리고 그 납부정형을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세관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문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수입물자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 수출물자인 경우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수출입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매가격으로 한다. 관세률은 정무원이 정한다.

제33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조선원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하는 해당 시기의 외화환산률에 따라 한다.

제34조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보

내온 선물

2.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여행자의 휴대품
3.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4.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어있는 물자
6.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제35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우리나라에 오는 대표단성원과 외교일군,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자를 들여오는 경우
2.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공화국 영역에 판매하는 경우
3.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물자를 공화국 영역에 판매한

경우

4. 보세물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제36조 세관은 물자가 부패변질, 파손, 류실되었을 경우 정상에 따라 해당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37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무역협정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관세률을 적용한다. 관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관세률을 적용한다. 무역협정에 관세률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8조 관세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자에는 그와 류사한 물자의 관세률을 적용한다.

제39조 관세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세관이 발급한 관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은행에 물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 받아 은행에 넣을 수 있다.

제40조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공민의 짐과 국제우편물은 관세를 물어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

입하는 물자는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집임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제41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물 수 없는 경우
관세납부기간 연장신청문건을 납부기간이
끝나기 5일 전에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
은 관세납부기간을 10일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42조 관세를 초과하여 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문 때로부터 1년 안
에 더 바친 관세를 되돌려 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5일 안
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세관은 관세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1년 안에 관세
를 추가하여 물릴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고의적인 행위로 관세를 잘
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부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3년
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

를 면제받고 들여온 물자를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관세가 면제된 물자를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관에 알리고 해당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를 물지 않은 물자는 팔고 살 수 없다.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짐입자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47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세물자를 가공, 포장, 조립하기 위하여 보세지역 밖으로 내가려는 경우 관세와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세관은 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반출한 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세관에 맡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 수 있다.

제 5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48조 세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매일 연체료를 물린다. 관세납부통지서를 내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관세를 물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와 연체료에 맞먹는 물자를 관세와 연체료로 처리하거나 해당 은행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돈자리에서 관세와 연체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49조 세관법규를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과 운수수단은 억류 또는 몰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0조 세관 수속과 검사, 관세납부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해당 세관과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상급세관에 신소청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상급세관은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처리받은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법

1993. 11.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

제 1 장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 영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 지점이 속한다. 외국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설립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 4 조 국가는 공화국 영역 안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법과 규정에 따라

야 한다.

제 6 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외환관리기관이 한다.

제 7 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제 8 조 공화국 영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약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율, 업무내용 같은 것을 밝힌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 9 조 합병은행의 설립신청은 합병당사자가 한다. 합병당사자는 은행설립 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합병계약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투자가의 영업허가증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외국투자가는 은행설립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투자가의 재정상태표, 영업허가증 사본,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은행 지점의 설립신청은 본점이 한다. 외국은행 본점은 은행설립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연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의 영업허가증 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보증서, 지점의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 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본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은행은 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은행설립을 신청한 자는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에 은행설립 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며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의무의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된다. 이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승인을 받으며 해당위원회 감독밑에 청산사업이 끝나면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외국투자은행은 기본규약을 고치거나 은행을 통합, 분리하고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바꾸려고 할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병은행의 한편 출자가는 상대

편 출자가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18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등록자본금을 조선원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1차 불입자본금을 등록자본금의 50% 이상 가져야 한다. 외국은행 지점은 운영자금을 조선원 8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성 외화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1차 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증 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액 또는 자기부담 채무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21조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본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연간 결산 이익금에서 5%를 떼여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결산에서 생긴 손실금을 보상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데만 쓴

다.

제22조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적립비율은 외국투자은행이 정한다.

제 4 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23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의 외화예금
2. 외화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 지불업무, 외화수형할인
3. 외국환자업무
4. 외화투자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
6. 외화송금
7. 수출입물자 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9.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10. 신탁업무

11. 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12. 기타 업무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하나의 기업에 자기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 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어야 한다.

제26조 외국투자은행의 결산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간 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 안으로 한다.

제27조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연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간 업무결산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으로, 분기 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를 다음 분기 첫달 15일 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2.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이자수입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3.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게 받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4.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제 5 장 제재 및 분쟁 해결

제29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문다.

1. 승인없이 책임자, 부책임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2.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3.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4. 정기보고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한 경우

제30조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종 밖의 업무를 한 경우와 승인없이 기본규약을 고쳤거나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금을 늘렸거나 줄인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1조 은행설립 신청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0개월 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 무역활동을 진행한다.

제 3 조 국가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지도한다.

제 4 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

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 조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제 6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제 7 조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경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제 8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이 속한다.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 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지대당국은 현지 집행기관이다.

제 9 조 중앙대외경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 지대의 개발, 경제관리 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 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3.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10조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지대당국을 통하여 투자 승인 신청을 받으면, 해당 투자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

제11조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제12조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 사업을 한다.
2.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인신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지대의 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4.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며 총투자액이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2천만원까지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5.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6. 투자가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7.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
8.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제공한다.
9. 이밖에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13조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투자 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합작기업, 합

영기업은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 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중앙대의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 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한다.

제16조 지대당국은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기관,

기업소 대표와 외국투자가대표로 구성되며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제 3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제17조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 안에서 국외에로 내갈 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어올 수 없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과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 대리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 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지대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로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자, 고급 기능공을 지대로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밑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외국투

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 밖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지대 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행한 생산 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관 세

제25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 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어오는 상품
2.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제2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어오는 경우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은 세관의 검사문건과 상품의 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통 화, 금 용

제30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류통화폐는 조선 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 원 또는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다.

조선 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율에 따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나라
와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
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대
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산 조선 원은 우
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3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 사이
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3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
무역지대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제 6 장 담보 및 특혜

제35조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
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
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
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
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3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제38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다.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제40조 외국투자자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

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하부구조 건설부분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41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제 7 장 분쟁해결

제4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1993. 11. 29 정무원 결정 제75호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 3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가 한다.

제 4 조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제 5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국가가 정한 통로로만 한다.

제 6 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지대 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초청한 문건을 가지고 사증 없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초청 기관은 외국인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출입자들의 명단을 내야 한다.

제 7 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오려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가져야 한다.

제 8 조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외국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지대당국의 출입국 사업부서에 자동차통행증 발급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한다.

제 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을 일정한 기간에 여러번 반복하려는 외국인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30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다회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가진 다른 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관광하려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관광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 안의 관광봉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려는 우리나라 주재 다른 나라 외교대표부, 경제무역대표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은 외교부에, 영사대표부 성원은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이밖의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에 제기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출국할 수 있다.

제1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들어왔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하기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와있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떠나기 5일 전에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여행증 또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자유무역항을 통하여 중계되는 무역화물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공화국 영역을 거쳐 화물자동차로 실어 나르려는 외국인은 자동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5일 전에 해당지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받아야 한다.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은 30일로 한다.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을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제1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17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5일 전에 해당 발급부서에 신청하여 기간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18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은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주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분실했거나 해당 기일 안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분실한 증명문건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값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린다.

제20조 국제 테러범, 마약 중독자, 마약 밀수입자, 전염병 환자, 정신병자와 이밖에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올 수 없다.

제21조 증명문건을 위조하였거나 정해진 통

로로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증명문건을 회수하고 벌금을 물리며 그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및거주규정

1994. 6. 14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체류 및 거주는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규정에 따라 지대에 체류 및 거주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외국인 체류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외국인은 지대에 단기체류하거나 장기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90일까지의 체류, 장기체류는 90일 이상의 체류이다.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에 거주할 수 있다.

제 4 조 지대안의 외국인 체류 및 거주와 관련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이 아래부터는 출입국사업부서라 한다)가 한다.

출입국사업부서에는 체류지 출입국사업부서가 포함된다.

제 5 조 지대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도착한 다음날부터 48시간 안으로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등록신청서를 내고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거주지, 체류하려는 곳, 기간, 체류이유 같은 것을 밝히고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나 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체류등록수속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초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하여 할 수 있다.

제 7 조 지대 안에 들어왔다가 들어온 다음 날부터 48시간 안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지대안의 무역항에 들어온 외국배 선원, 다른 나라 고위급 대표단성원, 우리나라 주재 다른 나라 대표부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제 8 조 외국인 여관, 숙소, 초대소에 숙박하려는 경우에는 숙박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여관, 숙소, 초대소는 외국인의 숙박정형을 출입국사업부서에 그날로 알려야 한다.

제 9 조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민족별, 직장직위, 체류하거나 거주할 곳, 기간, 체류 또는 거주 이유는 밝히고 최근 90일 안에 모자와 안

경을 벗고 찍은 사진(4×3센치미터) 4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은 17살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외국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에 동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잃어버린 다음날부터 5일 안으로 해당한 이유서를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어 발급받아야 한다. 이유서에는 사진 2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과 초청기관의 기간연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어린이의 출생, 본인 또는 동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와 직업 및 거주지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안으로 해당 신청서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야 한다.

제15조 출입국사업부서는 출생, 사망, 변동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대 안의 외국인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에는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공화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체류증, 거주등록증, 여행증, 관광증, 출입증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17조 지대 안에 체류하다가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바치고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대 안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대

밖에 있는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여행하였다가 지대로 다시 오는 경우 유효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

제19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의 발급과 그 유효기간의 연장, 출생 및 사망등록, 직업 또는 거주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중앙재정기관이 정한다.

못쓰게 되었거나 분실한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값을 내야 한다.

제20조 지대출입국사업부서는 이 규정을 어긴 외국인에게 정도에 따라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회수하며 재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1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8호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기업의 상주대표사무소(이 아래 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에 따라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 3 조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할 수 있다. 상주대표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4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지로 하며 그 성원수는 5명을 넘을 수 없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에는 책임자와

대표들이 포함된다. 통역원, 타자수, 부기원, 경리원을 비롯한 행정기술성원과 운전수, 경비원과 같은 봉사성원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에 속하지 않는다.

제 5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아래부터는 본 기업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연락과 자문사업, 경제기술자료의 소개와 같은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 기업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맺거나 대금과 물자를 주고받은 것과 같은 위임대리업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기업의 대리위임장을 도행정경제위원회(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본 기업의 위임대리업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자체로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되거리, 위탁판매를 하거나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수출물자를 구입하여 파는 것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활동을 할 수 없다. 공화국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상주대표사무소

의 활동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 7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변경, 기간연장과 같은 신청문건은 조선어와 외국어로 만들어야 한다.

제 8 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 9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 10 조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지대당국을 통하여 대외경제위원회(외국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 기업과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책임자의 이름, 대표성원수와 대표들의 이름, 설치장소, 활동내용, 상주기관 같은 것을 밝히고 본 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증서 사본, 거래하는 은행기관이 발급한 신용확인서, 상주하려는 대표사무소 책임자, 대표성원들의 위임장, 경력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금융기관의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에는 본 기업의 최근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기본규약, 이사회 의 성원명단 같은 것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외경제위원회, 중앙은행(이 아래 부터는 심사승인기관이라 한다)은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 심의한 다음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승인기관은 상주대표사무소의 설치를 승인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지대당국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3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를 내어 등록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신청서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의 내용을 밝히고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대당국은 승인된 상주대표사무소

를 등록하고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를 등록한 날이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일로 된다.

제1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체류증 또는 상주외국인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과 관련한 규정에 따르는 출입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6조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해마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 전에 지대당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설치장소, 상주대표 성원수를 변경시키거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

고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의 위임장과 경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으로 지대당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책임자가 결원이거나 1개월이상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상주대표 가운데서 어느 한 상주대표가 책임자의 대리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당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다른 은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0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해당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21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해마다 1월 안으로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연

간사업 총화자료를 내야 한다. 연간사업 총화자료는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상주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기간 연장신청서에는 연장하려는 기간과 이유를 밝히고 상주기간 본 기업이 우리나라와의 경제거래 정형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상주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은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번호를 받은 다음 자동차 3자책임보험에 들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은 팔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를 문 다음 지정된 상업(무역)기관을 통해서만 팔 수 있다.

제24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필요한 건물을 세

내거나 로력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건물관리기관 또는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세낸 건물, 채용한 로력의 관리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건물양도 또는 로동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통신은 공화국의 해당 체신기관을 통하여 보장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밑에 국제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이 끝났거나 상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철수하기 30일 전에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에 서면으로 알리고 세무 및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으로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증을 지대당국에 바치고 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기관의 납세 확인문건을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제27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변경 및 등록취소 수속을 하려는 경우에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해당기관에 물어야 한다.

제28조 심사승인기관과 지대당국은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 정형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검열일군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공화국 영역 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

제30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차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한다.

자유무역항규정

1994. 4. 28 정무원 결정 제20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계무역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 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무역항은 라진항, 선봉항, 청진항이다. 자유무역항에는 항지역과 항수역이 포함된다. 항지역에는 부두, 등대, 배수리기지, 짐의 야적장, 보관창고와 구내철길, 구내길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이 속하며 항수역에는 배의 입출항수로, 가박지, 정박지 같은 것이 있는 수역이 속한다.

제 3 조 경제무역활동을 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적이거나 출발지,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유무역항에 나들 수 있다.

제 4 조 자유무역항(이 아래부터는 항이라 한다)에 나드는 배와 짐에는 관세나 톤세, 운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5 조 항에서는 배의 취급과 짐작업, 짐보관, 배수리와 같은 경제활동을 한다. 배길안내,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의 운반, 재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과 봉사, 배 및 설비의 수리, 항시설물 및 설비의 임대, 보관창고의 운영과 같은 사업은 항관리운영기관(이 아래부터는 항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육상출입증을 발급하거나 배의 입출항 승인을 하며 항안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 항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침몰된 배와 짐을 배 또는 짐임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업은 항사업감독기관이 한다.

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 갱신하는 사업은 항건설기관이 한다.

제 6 조 외국투자가는 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창설하여 부두, 창고, 배수리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창설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항에 나드는 배, 선원, 여객과 짐은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수의 검역,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중계무역 짐은 해당검사, 검역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거나 검역을 한다.

제 8 조 항출입, 항에서의 경제무역활동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한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이 규정은 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공민,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조직(이 아래부터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체라 한다) 및 개인,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항 출입

제 10 조 항 출입은 지정된 육상 출입구와 입

출항수로를 통하여야 한다. 육상출입구를 통하여 항에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항사업 감독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이 있어야 하며 입출항수로를 출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사업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출항하려는 배의 임자 또는 선장은 배의 기술자료, 싯거나 부릴 짐명세서와 선원의 명단,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 배길안내지점의 도착 또는 출항예정시간을 밝힌 문건 같은 것을 항사업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11조 입항하려는 배는 배길안내지점에 도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출항하려는 배의 선장은 해당 지점에서 검사, 검역을 받을 때마다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내야 한다.

제13조 배가 입출항하거나 항수역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길안내는 항기관의 배길안내원이 한다. 배가 입항할 때는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가박지 또는 부두까지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

다. 항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배길 안내지점에서부터 외박지까지 배길안내를 받지 않고 들어올 수 있다. 배가 출항할 때는 항가박지 또는 부두에서부터 배길안내지점까지 배길안내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일정한 지점까지만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길안내를 받은 배에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배길안내원이 지지 않는다.

제14조 기름수송배, 가스수송배와 같은 위험물질을 실은 배는 항기관이 특별히 정한 수역에만 정박할 수 있다.

제 3 장 항의 이용

제15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 운반, 재포장, 가르기, 섞기 같은 작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작업 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배의 입항예정날자, 작업을 끝내는 날자와 시간, 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밝혀야 한다. 짐실이작업인 경우에는 짐작업계약서에 짐

모으기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짐을 보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 보관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자, 보관기관, 짐 보관과 관련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항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에는 항사용료, 기름공급료, 물공급료, 짐보관료, 짐작업료, 짐운반료 같은 것이 포함된다. 항에 보관하는 짐은 10일간 보관료를 받지 않는다.

제18조 배에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따라 한다. 부패 변질될 수 있는 짐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관계없이 먼저 싣거나 부릴 수 있다.

제19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과정에 배에서 생기는 로동재해에 대한 책임은 배임자가 진다.

제20조 공화국의 해당기관, 기업소는 항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배임자 또는 짐임자

의 대리사업을 하는 대리인기관을 설치하고 항안에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나라 기관, 기업체와 개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기관을 통하여 항안의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제22조 항의 관리운영과 설비개조에 필요한 자금은 항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보장한다.

제23조 항기관은 항관리운영을 위한 항연합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항연합위원회에는 항기관과 항사업 감독기관, 철도운수기관, 세관, 검사기관, 검역기관, 배 및 짐대리인기관, 항을 이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참가한다. 항연합위원회 책임자는 항장이다. 항연합위원회는 한달에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항안에서는 해당 항 및 해저에 대한 조사, 연구, 관측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항의 출입 및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4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5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1. 항의 구조물, 시설물, 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태워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6. 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억류하고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7. 요금을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억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8.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기재 또는 배를 몰수한다.

제26조 항사업감독기관은 사법검찰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사법검찰기관의 해당 문건에 의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수송수단 또는 짐을 억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억류하거나 유치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과 손실, 위험은 억류 또는 유치를 요구한 자가 진다.

제2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항운영과 이용에서 제기되는 의견상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한다.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1993. 12. 30 정무원 결정 제80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며 종업원들의 로동생활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투자기업 운영에 필요한 로력의 알선과 채용, 로동보수의 지불, 로동생활 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로동과 관련한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로동법규에 준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우리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인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해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하지 않는다.

제 6 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로동보수액은 그의 로동직종과 기술기능수준, 로동생산성에 따라 정한다. 로동보수에는 로임·가급금·장려금·상금이 속한다.

제 7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 8 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국민인 종업원들이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종업원을 대표하는 직업동맹과 로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로동계약에는 종업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 생산량

과 질지표, 로동시간과 휴식, 로동보수와 보험후생, 로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율, 상벌, 사직 조항 같은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로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로동계약 문건을 기업소재지 로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이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기관이 한다.

제 2 장 로력의 채용·해고

제11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로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로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업종별·기능별 로력수·채용기간, 로력비, 로동생활보장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로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로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로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 로력알선기관은 해당 기능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3조 우리나라 기업소를 모체로 하여 창설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필요한 로력을 그 기업소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재지 로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로력을 받아야 한다. 로력채용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로력알선기관이 보내주는 로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업동맹조직,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있다.

1. 종업원이 직업병이나 공상이 아닌 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미 하던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업의 생산경영 또는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는 경우
3. 기업이 파산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로

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4.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나 로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경우

제16조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직을 제기할 수 있다.

1.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2.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
3.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경우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1.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은 경우
2.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3. 여성 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우

제18조 외국투자기업은 이 규정 제15조 1, 2, 3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제16조

2, 3에 따라 사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일한 연한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일한 연한이 1년이 못되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분의 로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며 1년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 로임액과 일한 해수에 따라 계산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시키려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기업소재지 로력알선기관에 명단을 내야 한다.

제 3장 기능공의 양성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공화국 로동법규에 따라 그들에게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기업은 필요한 경우 기능공양성을 위한 양성소 또는 양성반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은 외국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양성기관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 기술

인재 양성은 종업원재직일군 양성, 학교졸업생들의 취업전 양성의 형태로 한다.

제 4 장 로동시간과 휴식

제23조 종업원들의 로동일수는 주 6일, 로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로동시간 범위에서는 로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외 로동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고 시간외 로동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해당한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 휴가와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 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해마다 해당한

종업원에게 관혼상제를 위한 1~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왕복 여행일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 5 장 로동보수

제26조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 월 로임기준은 2백 20원(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1백 60원)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부문의 로임기준은 높이 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정한 로임기준에 따라 직종, 직제별 로임기준, 로임지불 형태와 방법, 가급금, 장려금, 상금기준을 자체로 정한다.

제27조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수준, 종업원의 기술기능 숙련정도와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따라 로임수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28조 외국투자기업은 휴가 및 보충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로동보수를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로동보수는 휴가받기전 3개월 동안의 로동보수 총액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 로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의 로동보수액 계산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된다.

제29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닌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임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다.

제30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로동시간외 연장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로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밤일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사이에 일한 것이 포함된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명절날과 밤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로동시간외 연장작업을 한 종업원에게 로임과 함께 일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1백%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32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세우고 직업동맹 조직과 협의하여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데 모범적인 종업원에게 상금을 줄 수 있다.

제33조 외국투자기업은 로임, 가급금, 장려금을 주는 날자를 정하고 달마다 그 날에 내주어야 한다. 상금은 평가기간 다음 달에 주어야 한다. 로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퇴직, 해고시킨 경우에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에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 6 장 로동보호

제34조 외국투자기업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고 그를 개선 완비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고열, 가스, 먼지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과 같은 산업위생 조건을 보장하여 종업원들이 문화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에 일을 시켜야 한다.

로동안전기술교육 기간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1~2주일로 한다.

제36조 외국투자기업은 여성 종업원들을 위한 로동보호 위생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탁아소, 유치원을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내주는 로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의 해당 로동법규에 준하여 외국투자기업이 정한다.

제38조 외국투자기업은 작업도중 종업원이 사망되었거나 부상, 중독과 같은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로동보호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사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회보험 · 사회보장

제39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 공

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는 보조금·연금의 지불, 정휴양 및 치료가 속한다. 보조금과 연금을 받으려는 종업원은 보건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보조금과 연금을 받아야 할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외국투자기업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보조금 지불청구서를 사회보험기관에 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은행기관에서 해당 사회보험보조금을 받아 로동보수를 주는 날에 해당 종업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휴양소에 가고 오는데 드는 여비와 장례보조금은 해당 문건에 의하여 먼저 내주고 후에 청산받아야 한다.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보조금은 외국투자기업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어 수속한데 따라 사회보장연금지불기관에서 달마다 정한 날에 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0조 사회보험·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

· 연금은 공화국의 로동법규에 따라 계산

한다.

제41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보험기금은 종업원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보험료로 적립된다.

제42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양소, 휴양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정양소, 휴양소의 운영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낸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를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세우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들이 문화기술수준의 향상과 군중문화체육사업, 후생시설 운영 같은 데 쓴다. 문화후생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직업동맹조직이 한다.

제 8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5조 로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 또는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46조 로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로동안전시설과 산업위생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주어 시정하도록 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47조 벌금적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적용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돌려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벌금을 돌려줄 것을 제기받은 상급기관은 그것을 제기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 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공화국의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해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부록]

각종 관련 서식

-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설치신청서
- 기업창설신청서
-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
- 기업세무등록신청서
- 외국인세무등록신청서
- 재산등록(재등록)신청서
-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증(다회), 자동차
통행증 발급신청서
- 자유경제무역지대 사증, 여행증 발급신청
서
- 자유경제무역지대 체류증, 거주등록증 발
급신청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 발급신청
서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설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문건
**DOCUMENTS TO BE ATTACHED TO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RESIDENT REPRESENT-
ATIVE OFFICE OF FOREIGN COMPANY**

1. 외국인기업의 소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 기관이 발급한 기업등록증서사본 3부
3 copies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enterprise issued by the body concerned in domicile of foreign company
2. 거래은행이 발급한 신용확인문건 3부
3 copies of credit reference issued by the bank with which it keeps an account
3. 상주대표사무소 책임자와 대표들에 대한 해당 외국기업의 위임장 3부
3 copies of the letter of accreditation issued to the person in charge and other representatives by the foreign company concerned
4. 상주대표사무소 책임자와 대표들의 리력문건 3부
3 copies of curricula vitae of the person in charge and other representatives

To : _____ 앞

기업형태 _____
Type of business

기업창설신청서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COMPANY

1. 기업의 명칭 _____
Name of company

주소 _____
Address

2. 당사자들의 이름 조선측 _____
Name of parties DPRK side

상대측 _____
Foreign side

3. 대상추진동기 _____
Motivation for the current project

4. 계약일자 년 월 일 조업예정일자 년 월 일 경영기간 년
Date of contract Estimated date of inauguration Period of operation

5. 총투자액 _____ 등록자본 _____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투자비율 조선측 _____
Proportion of DPRK side
investment
상대측 _____
Foreign side

투자단계와 기간 _____
Phasing and period of investment

6. 업종과 경영범위 _____
Pursuit and scope of operation

합영, 합작, 기업창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문건
DOCUMENTS TO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A JOINT VENTURE

1. 기업의 기본규약 3부
3 copies of the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2. 계약서 사본 3부
3 copies of the contract
3. 경제기술타산서 8부
8 copies of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4. 상대측의 신용확인자료
Credit reference of the foreign side

합작기업, 합영기업의 경제기술타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DETAILS TO BE INCLUDED IN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OF
A JOINT VENTURE

1. 기업의 명칭, 주소
Name and address of company
2. 당사자들의 이름
Name of parties
3. 조직목적과 기술경제적유익성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technical and economic effectiveness
4. 업종과 경영범위
Pursuit and scope of company
5. 경영기간
Period of operation

6. 조업예정날자

Estimated date of inauguration

7. 투자관계(조선측, 상대측)

Details of investment (DPRK side and the foreign side)

- 1) 총투자액(설비비, 건물비, 비품비, 조업 및 생산준비비, 류동자금
기타 계)

Total amount of investment (equipment cost, building cost, furniture cost, inauguration and production preparation cost, circulation capital and so on.)

- 2) 등록자본, 투자비율

Registered capital and proportion of investment

- 3) 투자방식

Mode of investment

- 4) 현물투자내용(기계설비, 비품 또는 자재명, 규격 및 능력,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생산한 나라이름, 해결방도)

Contents of investment by equipment (machinery and equipments, furniture or materials, specification and capacity, unit, quantity, unit price, sum total, name of manufacturer country, ways of obtainment)

8. 건설과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ed to construction

- 1) 연건평, 부지면적, 총건설투자액

Floor space, site area, total amount of investment

- 2) 대상별 연건평, 건설투자액, 주요공사량, 건설기간, 건설방식(자체건설
또는 위탁건설)

Floor space by projects, construction cost, major construction works, period of construction, mode of construction (self-or contracted construction)

- 3) 건설대상의 위치와 선택근거, 린접과의 관계

Location of project and reason for it and relation with surroundings

- 4) 기존건물·시설물의 철거비용

Removal cost of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e

9. 생산 및 생산물처리와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ed to production and disposal of products

- 1) 지표별 년간생산량과 수출비율
Annual amount of products by indices and ratio of export
- 2) 국제시장형편과 국내수요, 수출(판매)가능성
Situation of international market and domestic demand, export (sale) possibility
- 3) 외화수지균형
Balance of foreign exchange
- 4) 폐설물의 리용 및 처리
Usage and disposal of garbage

10. 소요조건

Details of demand

- 1) 건설용 주요 원료, 연료, 자재소요량(지표, 규격, 단위, 소비기준, 연간 소요량, 보장대책)
Required amount of major raw materials, fuel and materials for construction (indices, specification, unit, standard consumption rate, annual demand, ways of supply)
- 2) 생산용 주요 원료, 연료, 자재의 소요량(지표, 규격, 단위, 소비기준, 연간소요량, 보장대책)
Required amount of major raw materials, fuel and materials for production (indices, specification, unit, standard consumption rate, annual demand, ways of supply)
- 3) 동력, 용수, 가스, 증기의 소요량과 보장대책
Required amount of power, water, gas and steam and ways of supply
- 4) 수송소요량과 보장대책
Transport demand and ways of meeting it
- 5) 관리기구정원, 종업원, 기술자, 기능공의 보장대책
Ways of how to supply managerial staff, employees, experts and skilled workers

11.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Forecast on profitability by phase

1) 지표별 예정수입

Estimated income by indices

2) 항목별 원가

Cost by category

3) 결산리윤

Taxable income

4) 세금공제 항목과 기타 공제액

Tax and other deductions

5) 리윤분배

Dividend

6) 투자보상기간

Period of repayment of investment

12. 기술적분석자료

Technical data of analysis

1) 기본생산기술공정과 기술경제적지표

Main production process and technical and economic indices

2) 받아들이는 새 기술(특허권, 상표권을 비롯한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내용, 그 평가가격과 실용가치

Newly introduced technology (industrial property right including patent, trade mark, utility model and copyright) and their contents, their assessed price and practical value)

13. 환경보호, 로동안전, 위생과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labour security and hygiene

14. 이밖에 필요한 내용

Others

15. 종합적분석

General evaluation

To : _____ 앞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1. 기업의 명칭 _____
Name of company

주소 _____
Address

2. 투자자의 이름 _____
Name of investor

주소 _____
Address

3. 외국인기업책임자의 이름 _____
Name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국적 _____ 전직무 _____
Nationality Former job

4. 업종, 생산품종과 규모
Pursuit, type of product & scale of production

5. 총투자액 _____ 등록자본 _____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투자형식 _____ 투자단계와 기간 _____
Mode of investment Phasing and period of investment

6. 거래은행 _____
Bank with which it keeps an account

7. 주요생산기술공정자료
Details relating to major production process

4. 투자자의 소재국 해당 기관이 발급한 투자허가에 대한 증명문건 3부
3 copies of the document of approval of investment issued by the body concerned in the domicile of the investor
5.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저작권설명서 3부
3 copies of the descrip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know-how and copyrights to be invested
6. 거래은행이 발급한 투자자의 자본신용확인서 3부
3 copies of credit reference of the investor issued by the bank of his account

첨부분건 3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The form of the document No.3 is as below

No	기계설비 및 자재명	용도	규격 및 능력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생산공장 및 회사이름	수입하려는 나라이름	원산지
No	Description of equipment and materials	Use	Specification & capacity	Unit	Quantity	Unit price	Sum total	Name of Manufacturer factory	Name of export country	Country of origin

기계설비명세에는 알림책을 첨부하여야 한다.

The list of machinery and equipments shall be accompanied by the catalogue
첨부분건 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 document No.5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저작권의 명칭과 소유자명
Titl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know-how, copyright and name of owners
2.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Technical information like technical literature, drawings and operation manuals
3. 평가가격과 그 계산근거
Assessed price and explanation of how to reach it
4. 실용가치
Practical price
5. 공업소유권, 저작권의 유효기간과 증서사본
Period of validity and copies of the certificate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copyrights

외국인기업의 경제기술타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THE FEASIBILITY STUDY REPORT OF THE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기업의 명칭, 주소, 위치
Name, address and location of company
2.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기간
Total amount of investment, registered capital and period of investment
3. 생산계획 및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ed to production plan and sale of products
4. 주요 생산공정설비의 기술적 우월성 분석자료
Analysis of technical advantage of major production equipment
5. 건설과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ed to construction
6. 주요 원자재, 동력, 용수, 소요량과 보장조건
Required amount of raw materials, power and water and ways of supply
7. 종업원의 채용 및 기술일군양성계획
Plan of employment and technical training
8.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Forecast on profitability by phase
 - 항목별 수입액
income by indices
 - 항목별 원가
cost by indices
 - 계산리윤
profit
 - 세금 및 기타 공제액
tax and other deductions
 - 순리윤
net profit
 - 투자보상기간
period of repayment of investment
9. 환경보호와 관련한 자료
Details rela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10. 이밖에 필요한 자료
Others

To : _____ 앞

기업세무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TAX REGISTRATION

기업명칭 _____
Name of company

주소 _____
Address

당사자기관 _____
Parties of company

조선측 _____
DPRK side

상대측 _____
Foreign side

기업등록날자 _____ 기업등록번호 _____
Date of registration of company Reference number of registration

경영기간 _____
Period of operation

종업원총수 _____ 그중 외국인 수 _____
Number of employees Number of expatriates

기업형태 _____ 업종 _____
Type of management pursuit

부지면적 _____
Site area

거래은행명칭 _____ 돈자리번호 _____
Name of the bank with which the company opened an account Reference number of account

등록자금 Registered capital

No	구분 Description	계 Sum total	조선측 DPRK side	상대측 Foreign side
1	설비, 비품 Equipment, furniture			
2	건물 Building			
3	류동자금 Circulating capital			
4	기타 Others			
5	합계 Grand total			

※ 기업등록증사본과 세무등록증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할것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company and the receipt for the tax registration fee shall be attached.

신청기업명, 공인 Name of the applicant body, confirmed seal

기업책임자, 인 The person in charge of company Signature

재정부기책임자, 인 The chief accountant Signature

년 월 일

Date : year month day

To : _____ 앞

외국인세무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TAX REGISTRATION OF
FOREIGN NATIONAL

이 름 _____
Name

국 적 _____
Nationality

주 소 _____
Address

려권번호 _____
Passport number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일자 _____
Date of issue of the certificate of stay or residence

체류 또는 거주기간 _____
Period of stay or residence

소득형태 _____
Type of income

신청자의 이름, 인
Name of applicant Signature

Date : 년 월 일
 year month day

To : _____ 앞

재산등록(재등록) 신청서 APPLICATION FOR (RE-) REGISTRATION OF PROPERTY

재산소유자의 이름 _____ 국적 _____ 민족별 _____
Name of owner of property Nationality Race

주 소 _____
Address

직 장, 직 위 _____
Occupation, position

재 산 명 _____
Description of property

단위 _____ 수량 _____ 건평, 톤수 _____
Unit Quantity Floor space, tonnage

처 음 값 _____ 대보수비 _____
Original price Overhauling cost

내 용 년 한 _____ 사용한 년한 _____
Design life-span Years of the past use

건 설(제 작)년 도 _____
Year of construction (manufacture)

평 가 한 가 격 _____
Assessed price

평가등록한 날자 _____
Data of registration of assessed price

※ 공증기관의 공증문건을 첨부할것
Attestation of the notary's office shall be attached.

신청자의 이름, 인
Name of applicant Signature

년 월 일
year month day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증(다회),
자동차통행증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ENTRY (MULTI-ENTRY) PERMIT &
PASS OF VEHICLE TO TH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DPR OF KORA

이 름 Name		외 국 문 이 름 Name in native language		사 진 3×4cm Photo
남녀별 Sex		난 날 Date of birth		
현 재 국 적 Present nationality		민족별 Race		
사 는 곳 Place of residence				
직 장 직 위 Occupation and position				
도착, 출발날자 Date of arrival & departure		출입 및 여행기간 Period of entry & travel		
통 과 지 점 Boundary checkpoint				
출입 및 여행리유 Reason for entry & travel				
수 입 인 지 Revenue stamp	신청자 이름 Name of applicant		수 표 Signature	
	Date :		년 year	월 month

자동차관계
Details of vehicle

운전수이름 Name of driver				민족별 Nationality		
차 형 Type of vehicle		차 색 갈 Color of vehicle		차 번 호 Plate number		
통 행 목 적 Purpose of travel						
실 은 짐 또 는 실 을 짐 이 름 Description of freight loaded or to be loaded		규 격 Size		수 량 Quantity		
통행기간 Period of travel						
<p>특 기 란 Note</p>						
수입인지 Revenue stamp						

자유경제무역지대 사증, 여행증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VISA, TRAVEL CERTIFICATE TO TH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DPR OF KOREA

이름 Name		남녀별 Sex		난 날 Date of birth		사진 2매 2Photos 3×4cm
국적 Nationality			민족별 Race			(사증발급 인 경우에만 한함 (for visa only)
직장직위 Occupation and position						
대표단 이름 Name of delegation			체류, 거주지 Place of stay, residence			
려권종류, 번호 Type & number of passport			국경통과지점 Boundary checkpoint			
여행목적지 Place of destination			사증, 여행기간 Period of visa, travel			
신청리유 Reason for application						
휴대품명 Description of personal articles						
동반자 Accompanist	이름 Name		남녀별 Sex		난 날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현직 Present occupation			본인과의 관계 Relation with the applicant		
수입인지 Revenue stamp	신청자 이름 Name of applicant			수표 Signature		
	년 월 일 Date : year month day					

**자유경제무역지대 체류증,
거주등록증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STAY
OR RESIDENCE IN TH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DPR OF KOREA

이름 Name		외국문 이름 Name in native language		사 진 Photo 3×4cm
남녀별 Sex		난 날 Date of birth		
현재국적 Present nationality		민족별 Race		
사는 곳 Place of residence				
직장직위 Occupation and position				
려권종류, 번호 Type and number of passport		입국날자 Date of entry	체류, 거주기간 Period of stay, residence	
체류, 거주할 곳 Place of stay, residence				
체류, 거주리유 Reason of stay, residence				
신청자 이름 Name of applicant			수 표 Signature	
수 입 인 지 Revenue stamp	신청기관 Applicant body			
	Date : 년 월 일 year month day			

동 반 자 Accompanist							
관 계 Relation	이 름 Name	남녀별 Sex	난 날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 lity	민족별 Race	현 직 Present occupation	변동정형 Note of change
유 효 기 간 Period of validity							
			년 월 일까지 Till year month day				
			년 월 일까지 Till year month day				
			년 월 일까지 Till year month day				
			년 월 일까지 Till year month day				
			년 월 일까지 Till year month day				
특 기 란 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ISSUE OF TOURIST
CARD, DPR OF KOREA

이 름 Name in full				사 진 Photo 3×4cm
성 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민족별 Race				
현재국적 Present nationality				
현재사는곳 Present address				
현재직장 및 직위 Present occupation and position				
여권종류 및 번호 Type, number of passport				
관광기간 Period of tourism	19	년	월	일부터 Day
	From	Year	Month	
	19	년	월	일까지 Day
	To	Year	Month	
관광지 Place of tourism				
수입인지 Revenue stamp	신청자 이름 Name of applicant	수 표 Signature		
	년	월	일	
	Date :	Year	Month	Day

을 저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제22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 자와 저당받는 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는 자는 저당하는 자에게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 사본, 토지이용증 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을 해야 한다.

제24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는 저당한 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 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25조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 자가 처분한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 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

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 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제26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 기간 안에 저당받은 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이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 자와 저당한 자는 10일 안으로 토지이용권 저당등록 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 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값이다.

제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